

《海槎日記》 속의 候文과 조선어번역문

李賢熙* · 福井玲**

I. 들어가기

제11차 通信使行이었던 癸未·甲申使行(1763~1764년)은 매우 풍성한 기록을 남겼다. 조선측의 기록, 일본측의 기록, 양측이 참여한 필답기록 등이 대표적이다.

조선측의 기록은 正使였던 趙曠(1719~1777)의 《(趙濟谷)海槎日記》,¹⁾ 製述官 南玉(1722~1770)의 《日觀記》 및 《日觀詩草》와 《日觀唱酬》, 一房書記 成大中(1732~1812)의 《日本錄》, 二房書記 元重舉(1719~1790)의 《乘槎錄》과 《和國志》, 三房書記 金仁謙(1707~1772)의 《日東壯遊歌》와 《東槎錄》,²⁾ 譯官(三房漢學上通事) 吳大齡(1701~?)의 《溟錄(癸未使行日記)》, 譯官(二房漢學押物通事) 李彥頃(1740~1766)의 《松穆館儘餘稿》, 名武軍官(二房日供) 閔惠洙(1723~?)의 《槎錄》 등이 있으며, 그 외 《癸未隨槎錄(癸未信行錄)》³⁾과 《海行日記》⁴⁾ 등도 있다.⁵⁾

*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 東京大學 대학원 한국조선문화연구전공 교수

- 1) 國立中央圖書館本은 表題名이 ‘趙濟谷海槎日記’로 기록되어 있고, 朝鮮古書刊行會本은 ‘海槎日記’로 기록되어 있다. 앞으로는 《海槎日記》로 기록하기로 한다.
- 2) 김인겸의 《東槎錄》은 일부의 혼적만 남기고 失傳되었다고 한다. 그 존재에 대하여 특히 최강현(2000)과 구지현(2006)이 참조된다.
- 3) 구지현(2005)는 卞琢이 지은 것으로 추정하였다. 《海槎日記》의 〈三使一行錄〉에는 2船 騎船將 金潤河이 卞琢으로 交替(移差代)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구지현은 배와 관련된 서술이 자세함을 통하여 그 작자를 卞琢이라고 추정하였다.

일본측의 기록은 『寶歷信使記錄』, 『寶歷信使記錄下書』, 『朝鮮人來聘行列』,⁶⁾ 『韓使來聘記錄』, 『寶歷十四年朝鮮使記』, 『朝鮮來聘寶歷物語』⁷⁾ 등이 있다.

필담기록은 龜井南冥 編의 『浹浹餘響』, 奧田尚齋 編의 『兩好餘話』, 編者未詳의 『朝鮮人草書日本人眞書筆話』, 宮瀬龍門 編의 『東槎餘談』,⁸⁾ 伊藤維典 編의 『問槎餘響』, 因靜 編의 『東渡筆談』, 大典顯常(竺常) 編의 『萍遇錄』 등이 있으며, 叢書 『和韓雙鳴集』에도 『芥園問槎』, 『仙水遊戲』 등이 실려 있다.⁹⁾

正使였던 趙曠이 『해사일기』를 남겨, 그것이 가장 모범적인 通信使行記錄으로 꼽힌다는 점은 기존의 여러 통신사행에 비추어 볼 때, 매우 특이한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그의 『해사일기』가 포함되어 있는 『海行摺載』의 편찬과 관련지어 이해할 수 있다.

애초에는 正使 徐命膺, 副使 趙璘, 從事官 李得培가 三使로 差定되었으나 (1762년 8월), 使行에 임박하여(1763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改差되었다. 마지막으로 改差된 정사는 조엄은 1756년에서 1757년까지 釜山浦·倭館을 관찰하는 東萊府使로 재임한 바 있고, 1757년에는 對日外交의 지방책임자격인 慶尙監司에 올라 1759년까지 재임한 바 있었다. 만 3년에 걸친 경력으로써

- 4) 구지현(2006: 62~67)에서는 조엄의 『海槎日記』에서 개인적인 감상 부분을 빼고 줄인 압축본으로서 아마도 당시 名武軍官(一房工房)으로 통신사행에 참여하였던 徐有大나 그 집안에서 그런 작업을 행하였을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일종의 표절 행위라 할 것이다.
- 5) 물론, 『朝鮮王朝實錄』·『增訂交隣志』·『通信使牘錄』·『同文彙考』 등의 문헌에도 그에 대한 공식기록이 포함되어 존재한다.
- 6) 國立中央圖書館 소장의 것은 인터넷을 통하여 원문보기를 할 수 있다.
- 7) 이것은 이른바 實錄體 小說인바, 安代洙(2013: 2~3)에 따르면 副使騎船 破損事件이나 崔天宗 殺害事件 등을 소재로 한 실록체 소설이 20여 종 존재한다고 한다.
- 8) 이 문헌 속에 들어 있는 李彦琪 관련 기록이 최근에 다시 관심의 대상이 된 바 있다(정민 2007 참조).
- 9) 李元植(1997: 660~664)에는 54종의 필담자료가 목록화되어 있고, 구지현(2006: 95~97)에는 29종이 목록화·내용분석이 이루어져 있으며, 高橋昌彦(2010: 266~287)에는 45종이 목록화되어 있다.

日本觀을 구축하는 기반을 닦은 조엄이 갑작스런 개차에도 불구하고,¹⁰⁾ 불과 20여 일 동안이지만 차분하게 통신사행의 준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기반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1748년 통신사행의 정사였던 洪啓禧는 1747년에 통신사로差定된 뒤 그 때까지의 通信使行錄을 수집·편찬하고 〈前後使行備考〉를 맨 앞에 실어 제목을 ‘海行摠載’라 하였다. 홍계희의 필사본 ‘해행총재’는 그 뒤 1763년에 이미 통신사행의 정사로 차정되어 있던 徐命膺에게 넘겨져 61편으로翻騰되고 제목이 ‘息波錄’으로 불여졌다. 이것이 다시 조엄에게 이어져 그의 《해사일기》를 포함한 오늘날의 ‘해행총재’가 되었다.¹¹⁾ 이 사실은 조엄의 《해사일기》 1763년 10월 6일자 日記를 통하여 자세히 살필 수 있다. 번거롭지만 여기서 그 날의 일기 일부를 살피기로 한다.

- (1) 전후의 통신사 가운데 使臣이나 員役을 논할 것 없이 日記를 쓴 자가 많았다.
尚書 洪啓禧가 이를 널리 수집하여 ‘海行摠載’라 이름한 것을 副提學 徐命膺이
다시 베껴 써서 ‘息波錄’이라 제목하여 모두 61편을 만들어 사신 일행이 참고
하여 열람할 자료로 삼았는데, 그가 遷任하게 될 적에 모두 나에게 보내 주었
다.

내가 원래 자세히 열람하지 못하고 대강 보니, 〈前後使行備考〉 1편을 시작으로 하여 前朝의 團隱 鄭夢周가 사신 갔을 때에 지은 시[鄭團隱奉使時作] 1편을 다음으로 하고, 高靈 申叔舟가 계해년(1443, 세종 25)에 서장관으로 사신 갔을 때에 지은 것 1편 및 그가 지어 올린 《海東諸國記》 1편을 다음 편으로 하고, 그 아래에는 경인년(1589, 선조 23)에 부사로 갔던 鶴峯 金誠一의 《海槎錄》 4편과 병신년(1596, 선조 29)에 사신 갔던 秋逋 黃愼의 書寫 金哲佑의 《東槎錄》 1편이 있는데, 추포가 기록한 것은 산실되어 전해지지 않으니 한스러운 일이다. 睡隱 姜沆의 《看羊錄》 1편이 있는데, 강항은 바로 임진왜란 때에 전직 좌랑으로서 포로가 되어 갔다가 4년 만에 돌아온 사람이다. 병오년(1606, 선조 39)에 副使로 갔던 慶暹의 《海槎錄》 1편과 정사년(1617, 광해군 9)에 정사로 갔던 秋灘 吳允謙의 《東槎錄》 1편, 종사관 石門 李景稷의 《扶桑錄》 1편이 있고, 갑자년(1636, 인조 2)에 副使로 갔던 姜弘重의 《東槎錄》 1편이

10) 실제로 에도[江戶]에서 세 차례 만나 필담을 하었던 채주[祭酒] 林信愛는 통보받은 명단과 차이 나는 사람들이 三使로 온 사실에 대하여 놀라움을 표명한 바 있다 (《韓館唱和》 권2).

11) 이 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河宇鳳(1986: 77~80)을 참조하기 바란다.

있고 병자년(1636, 인조 14)에 정사로 갔던 참관 任統의 《日記》 1편, 부사 東溟 金世濂의 《海槎錄》 3편, 종사관 漫浪 黃屎의 《東槎錄》 1편이 있다. 계미년(1643, 인조 21)에 부사로 갔던 龍洲 趙納의 《東槎錄》 1편, 종사관 竹堂 申孺의 《海槎錄》 2편이 있고 또 《癸未日記》 1편이 있으니, 반드시 그때 따라간 사람의 지은 것일 터이나 누구인지 알 수 없다. 을미년(1655, 효종 6)에 종사관으로 갔던 壺谷 南龍翼의 《扶桑錄》 3편이 있고, 임술년(1682, 숙종 8)의 통신사 행차 때는 사신의 일기는 없고, 다만譯士 洪禹載의 《東槎錄》 1편과 譯士 金指南의 《東槎錄》 1편만 있고, 신묘년(1711, 숙종 37)에는 종사관 南岡 李邦彥의 《東槎錄》 2편과, 譯士 金顯門의 《東槎錄》 1편이 있고, 기해년(1719, 숙종 45)에는 정사 北谷 洪致中の 《海槎錄》 2편과 부사 驚汀 黃璿의 《東槎錄》 19편, 재술관 申維翰의 《海遊錄》 3편, 幕神 鄭后僑의 《扶桑錄》 1편이 있다. 정묘년(1747, 영조 23)에는 정사 澄窩 洪啓禧의 기록이 있는데, 아직 내용지 않았고, 부사 竹裡 南泰耆의 《槎上記》 4편이 있고, 또한 草本으로 된 《槎上記》 수십 편으로 나눌 만한 것이 있으니, 이는 역관들이 배낀 것이다.

전후의 일기가 이와 같이 많아서 없는 말이 거의 없다. 산천·풍속·관직·법제의 큰 것은 前輩들의 기록에 이미 다 말하였고, 의복·음식·기명·화훼 및 으레 거행하는儀節, 日供의 加減 등의 일은 모두 草本 《槎上記》에 실리지 않은 것이 있는데, 자세하게 다 갖추되 번거롭고 세쇄함을 혐의하지 아니하여, 자못 그 모든 光景을 그려낸 것과 같아 足히 通信使로 갈 때의 謄錄冊이 될 수 있다.

나도 이번 길에 봇 나가는 대로 일기 쓰는 것을 면하지 못하였는데, 전 사람들이 이미 기록한 말을 다 빼어버리자니 실재를 기록하는 것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다만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과, 어리석은 소견이 미치는 대로 취하여 실었으나 이미 이런 등의 일에 익숙하지 못하고 또 병들이 게으르다 보니, 이루어진 뒤에 볼 만한 것이 없을까 두렵다.(前後信使, 毋論使臣員役, 多有日記者, 洪尚書啓禧, 廣加蒐集, 名以海行摠載, 徐副學命膺翻贊之, 題以息波錄, 合爲六十一編, 以爲行中考閱之資, 及其遞任也, 盡送於余, 余固未及詳覽, 而概見之, 則以前後使行, 備考一編爲始, 前朝鄭圃隱奉使時作一編次之, 申高靈叔舟癸亥以書狀奉使時作一編, 及撰上海東諸國記一編又次之, 其下有庚寅副使金鶴峯誠一海槎錄四編, 丙申有黃秋浦愼之書寫金哲佑東槎錄一編, 秋浦所錄, 逸而不傳, 誠可恨也, 有姜睡隱沉看羊錄一編, 此是壬辰亂時, 以前佐郎被擄而去四年而歸者也, 丙午有副使慶暹海槎錄一編, 丁巳有正使吳秋灘允謙東槎錄一編, 從事官李石門景稷扶桑錄一編, 甲子有姜副使弘重東槎錄一編, 丙子有正使任參判統日記一編, 副使金東溟世濂海槎錄三編, 從事官黃漫浪屎東槎錄一編, 癸未有副使趙龍洲納東槎錄一編, 從事官申竹堂濡海槎錄二編, 又有癸未日記一編, 必是其時從人, 而未知爲誰也, 乙未有從事官南壺谷龍翼扶桑錄三編, 壬戌信行則無使臣日記, 只有譯士洪禹載東槎錄一編, 譯士金指南東槎錄一編, 辛卯有從事官李南岡邦彥東槎錄二編, 譯士金顯門東槎

錄一編, 己亥有正使洪北谷致中海槎錄二編, 副使黃鷺汀璿東槎錄十九編, 製述官申維翰海游錄三編, 幕裨鄭后僑扶桑錄一編, 丁卯正使洪澹窟啓禧有所錄, 而姑不出, 有副使南竹裡泰耆槎上記四編, 而又有草本槎上記, 可分數十編者, 此則譯官輩贋出者也。前後之日記, 若是夥然, 殆無言不有矣。山川風俗官職法制之大者, 前輩所錄, 已盡得之矣, 衣服飲食器皿花卉, 暈夫應行儀節日供加減等事, 無不畢載於草本槎上記, 織悉詳備, 不嫌煩瑣, 殆若畫出光景者然, 足可為信行時贋錄冊矣。余於此行, 亦不免信筆記日, 而前人已錄之言, 如欲盡拔, 則未為記實, 故只取其目擊耳聞及愚見所到處載之, 而既不閑於此等事, 又且病懶, 既成之後, 恐無足可觀者矣。) [밑줄: 인용자. 이하 마찬가지임]

사신 일행이 참고하여 열람할 자료로 삼고 통신사로 갈 때의 贊錄冊이 足히 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는 것이다. 조엄이 통신사행 내내 이 기록물들(‘息波錄’, 특히 ‘草本 槎上記’)을 끼고 다녔으니,¹²⁾ 만약 불행한 사고가 났더라도 이 기록들이 현재까지 전해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¹³⁾ 河宇鳳(1986: 78, 84)에서는 《海行摠載》의 再編纂에 一房書記로서 조엄을 보필한 바 있는 成大中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하였는데,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다.¹⁴⁾

12) 《해사일기》 권2, 1763년 11월 24일자 일기를 참조하기 바란다. “일기는 애초에 자세히 적으려 하였으나, 때로 《息波錄》과 《槎上記》를 보았더니, 전인들이 이미 다 말하였으므로 거듭할 필요가 없고, 또 내가 병들고 계을리서 빼뜨린 것이 많다。(日記初欲詳錄, 時見息波錄與槎上記, 則前人已盡之, 言不必疊床, 且因余病懶, 間多遺漏。)”라고 하였다.

13) 실제로 1763년 11월 13일 壹岐島 앞바다에서 正使騎船의 鷗木이 부러졌는데, 名武軍官들인 徐有大·柳達源의 공로로豫備鷗木을 갈아 꽂고서 겨우 壹岐島에 정박할 수 있었다. 이때 정사 조엄은 國書가 든 함을 등에 지고 죽을 각오를 하였다고 한다(《해사일기》 권5, 〈筵話〉, 7월 8일). 같은 해 12월 3일 藍島 앞바다에서 副使騎船이 파손되어 卜船에 옮겨 타고서야 겨우 藍島에 정박할 수 있었다(《해사일기》 권5, 〈장계〉, 12월 4일). 이 副使騎船의 파손 문제는 다음에 다룬 예문 (1)과 관련된다.

14) 성대중의 〈海槎日記序〉에서는 “공이 사행길에 손수 일기 4권을 편술하여 상자에 간수해 두었는데, 尚書公조엄의 아들 趙徽寬으로 당시 吏曹判書였음: 인용자이나 大中에게 서문을 지으라고 부탁하였다. 나는 내가 젊어서 기록하는 일로 공을 섬기면서 그분의 모든 행동과 기뻐하고 슬퍼하시는 일을 모두 보았는데, 지금 나 또한 늙어 머리가 회어졌다. 매양 옛날 일을 회상하며 슬퍼하지 않은 적이 없고, 더군다나 또한 공께서 나를 알아주신 영광을 늙어갈수록 더욱 감히 잊을 수 없음

『해행총재』는 현재 그異本이 세 종류가 전해지고 있다.¹⁵⁾ 國立中央圖書館本은 필사본으로서 28책으로 구성되어 있다.¹⁶⁾ 권24~권28이 『해사일기』이다. 1909년부터 1916년까지 釋尾旭邦(春仍)의 朝鮮古書刊行會¹⁷⁾에서 고대로부터 조선시대까지의 중요한史料를 모아 ‘朝鮮群書大系’를 간행하였는바, 그 가운데 繢々第3輯~第6輯에 4책의 『海行摠載』(1914년 발행)가 活字洋裝本으로 수록되었는데, 이것이 이후 널리 이용되었다. 『해사일기』는 繢々第6輯에 포함되어 있다. 民族文化推進會에서 고전국역사업의 하나로 조선고서간행회에서 편찬한 『해행총재』를 底本으로 하되, 11종의 사행록과 견문록을 추가하여 1974년부터 1981년까지 12책(색인·영인 포함)으로 번역하였다. 그러므로 『해사일기』는 크게 보아 필사본과 활자양장본의 두 종류가 있는 셈이다. 이들 사이에는 글자의出入이 약간 있을 뿐 그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에랴? 삼가 보고 기억나는 바를 기록하여 상서공의 부탁에 답하고, 이어 영남 조운의 일을 언급하여 공이 영남에 공적을 남긴 일이 유독 일본에 사신 갔던 노고 정도뿐이 아닌데도 그 혜택이 널리 퍼지지 못하게 된 것을 슬퍼하는 바이다. 아아! 한탄스럽도다. 경신년(1800, 영조 24) 5월 옛날 書記 成大中은 삼가序한다. (公在海行, 手編日記四卷, 貯在溪笥, 尚書公屬大中以序。大中少以文事事公, 備見其屈伸欣戚, 而今亦老白首矣。每懷疇曩, 未嘗不愴然而悲, 况又知遇之榮, 老益不敢忘也。謹書所觀記, 以復尙書之託, 而仍及嶺漕事, 以公之績於南者, 不獨海槎之勞, 而恫厥施之不博也。嗚呼歎矣。庚申仲夏舊書記成大中謹序)라 되어 있어, 『해행총재』의 재편찬과 성대중과의 관련성을 전혀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15) 현재 우리가 볼 수 있는 『해행총재』가 원래 조엄이 재편찬한 것과는 약간의出入이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조엄이 열거한 書目 가운데 일부가 들어 있지 않고 거론되지 않은 사행록이 포함되어 있기도 한 것이다. 일례로, 조엄이 “이제 고성 현감 鄭弼臣이 와서 그 高祖上舍公의 『海上錄』을 보이는데, 이 또한 하나의 『看羊錄』이었다. 내 이미 『海行摠載』에다 끼워 넣었고, 또 정군이 방금 그 간행을 계획한다 하기에 소략하나마 跋文을 써서 보낸다。(今者鄭固城弼臣來示其高祖上舍公海上錄, 此亦一看羊錄也。余既添入於海行摠載, 又聞鄭君方謀剞劂, 略題跋語以歸之。)”(『海上錄』, 〈趙曠, 月峯海上錄跋〉)라 하였지만, 이 문헌은 민족문화추진회의 현대어번역본에서야 비로소 추가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조엄이 재편찬한 것과는 일정한 거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16) 인터넷으로 원문보기를 할 수 있고 인쇄도 할 수 있다.

17) 釋尾旭邦(春仍)과 朝鮮古書刊行會에 대하여는 崔惠珠(2005, 2006)을 특히 참조하기 바란다.

II. 候文과 그 朝鮮語翻譯文

조선에서 소로분(候文)은 譯官들만이 읽고 작성할 수 있는 것이었다. 『捷解新語』 권10의 候文도 단지 譯官用이거나 譯官志望生用이었을 뿐이다.

통신사행을 간 三使(正使·副使·從事官)나 文士(製述官·書記)들이 候文을 전혀 몰랐던 사례는 여러 군데에서 목격된다. 여기서 李元植(1997: 472)에 소개되어 있는 한 예를 보도록 하자. ‘寛延度(1748), 洪景海의 『隨槎日錄』에는, 兵庫에 도착했더니 代官이 杉重과 술을 進上하려 왔다. 그 書付에는 ‘覺’이라고 머리에 쓰고 ‘右之通從公儀三使江’이라고 써어 있었다. 이것은 물론 “위와 같이 나라로부터 ‘三使에게’”라는 의미이지만, 三使는 譯官에게 물어 보고서야 겨우 알 수 있었다고 한다.’¹⁸⁾는 것이다. 洪景海는 正使 洪啓禧의 차남으로서 子弟軍官으로 따라간 것이지만, 아무튼 역관을 제외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候文은 역관의 번역을 통하여서만 이해될 수 있는 존재였던 것이었다.

『해사일기』 권5, 〈與彼人往復文字〉¹⁹⁾에는 9편의 候文과 그 조선어번역문이 함께 수록되어 있다. 대조적으로, 함께 수록된 漢文에는 번역문이 달려 있지 않다. 〈與彼人往復文字〉는,

1. 東武의, 風波에 뒤집힘을 삼가리는 글[對馬島 府中에 있을 때](東武慎風翻書[在馬州府中時])
2. 藍島에서 副船·曳船의 일로 대마도주에게 한 筆談(藍島以副船曳船事與馬州守筆談)

18) 寛延度(1748) 洪景海 『隨槎日錄』には、兵庫に着くと代官が杉重や樽(酒)を進上してきた。その書き付けには「覺」と首書し「右之通從公儀三使江」と書かれている。これは勿論右の通り公儀より「三使え」という意味であるが、三使は譯官にきいてみて、やつとわかつたという。

19) 이 ‘往復文字’의 ‘文字’는 “letter, script”的 의미를 가지는 [문짜]의 것이 아니라, “sentence, text, book, document” 등의 의미를 가지는 [문재]의 것이다. 한국에서의 ‘文字’가 보이는 重義性에 대하여는 李賢熙(2012), Hyeon-hie LEE & Soo Yeon LEE(2012)와 연규동 외(2012)를 참조할 수 있다.

3. 回答(回答)
4. 술을 거절한 필담(却酒筆談)
5. 회답(回答)
6. 東武의 執政이 副船의 일로 關白의 慰問을 전해 온 말室津에 있을 때(東武執政以副船事致關白慰問之語[在室津時])
7. 東武가, 사신 행차가 대관성에 닿았을 때 위문한 말大坂에 있을 때(東武以行使到坂城慰問之語[在大坂時])
8. 國書 앞을 말을 탄 채 범한 왜인을 따져서 다스리는 일로 도주가 사람을 시켜서 전해 온 말洲股에 있을 때(以國書前犯馬倭人查治事島主伴語[在洲股時])
9. 국서 앞을 말을 탄 채 범한 왜인을 따져 내어 대마도로 끌어 보내는 일로 도주가 사람을 시켜 전해 온 말같은 날(國書前犯馬倭人查出縛送馬島事島主伴語[同日])
10. 傳命한 이튿날에 島主가 무사히 예를 지낸 것을 와서 사례한 말江戸에 있을 때(傳命翌日島主以無事行禮來致謝語[在江戸時])
11. 林 太學頭 父子와의 필담(與林太學頭父子筆談)
12. 祭酒에게 한 첫 번째 회답(初答祭酒)
13. 小林에게 한 회답(答小林)
14. 祭酒에게 한 두 번째 회답(再答祭酒)
15. 세 번째 회답(林信言이 칠언율시 한 수를 보내오고, 林信愛가 칠언율시 세 수를 보내왔었음)(三答信言呈七律一首信愛呈七律三首)
16. 太學頭에게 화답해 보낸 시[成 書記가 대신 지음](和送太學頭詩[成書記代作])
17. 秘書監에게 화답해 보낸 시[南 製述이 대신 지음](和送秘書監詩[南製述代作])
18. 林信言에게 화답해 보낸 시[南 재술이 대신 지음](和送信言詩[南製述代作])
19. 林信愛에게 화답해 보낸 시[성 서기가 대신 지음](和送信愛詩[成書記代作])
20. 林信愛가 행차를 배웅하는 序 한 편(林信愛送行序一篇)
21. 以酌庵 승려에게 화답한 시성 서기가 대신 지음(和以酌僧詩[成書記代作])
22. 水戶州 太守 源宗翰의 副啓 한 통(水戸州太守源宗翰副啓一通)
23. 日本國 宗室參政 從三位 兼 行在近衛 權中將 水戶侯 源公 座下(日本國宗室參政從三位兼行在近衛權中將水戸侯源公座下)
24. 對馬太守를 작별하는 글(別對馬太守書)
25. 崔天宗이 찔려 죽음을 당한 뒤에 差倭에게 적어 보인 글(上段은 日記와 狀啓에 여러 번 나오므로 하단만을 적음)(崔天宗被刺後錄示差倭書[上段累見日記狀啓故只錄下段])
26. 島主가 와서 江戸의 査覈하는 刑官이 올 것임을 전한 말(島主來傳江戸行査刑官將來之語)
27. 도주가 天宗의 일로 한 말(島主以天宗事)
28. 두 장로가 와서 전한 데에 대해 회답한 말(回答兩長老來傳之語)
29. 두 장로의 글(兩長老書)

30. 두 장로에게 회답한 글[대마도 태수 및 두 장로와 왕복한 글 중에서 이미 狀聞에 들어간 것은 머리말만 빼고서 이미 모조리 배겼으므로 다시 거듭 적지 않음](答兩長老書與馬州守及兩長老往復書之已入狀聞者只去頭辭既已沒贍故不復疊錄)
31. 두 장로와 首譯 사이의 필담(兩長老與首譯筆談)
32. 두 장로에게 보낸 글(與兩長老書)
33. 장로에게 보낸 글(與長老書)

의 33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候文으로 된 것은 1, 5, 6, 7, 8, 9, 10, 26, 27의 아홉 편이다.

이 候文 및 그 번역문과 관련하여서는 《해사일기》의 1763년 11월 2일자 일기²⁰⁾를 통하여 그 사정의 一端을 살필 수 있다.

(2) 禮가 끝나자 島主가 손수 東武의 서신 한 통을 전해 주는데, 文理가 이루어지지 않고, 또 語錄이 많아서, 마치 우리나라의 吏讀와 같았다. 首譯으로 하여금 풀어서 아뢰게 하였더니, 대개, 信行 때 조심하고 살펴서 바람을 기다리라는 뜻인데, 東武는 江戶를 가리킨 것이다. 도주에게 申飭하여 信行에게 通寄한 것이다. 그것을 받아 두고 譯官으로 하여금 번역하여 바치게 하였다.[번역한 글은 아래에 있다.] 도주가 奉行을 시켜 首譯에게 말을 전하면, 수역이 우리말로 사신에게 와서 고하고, 사신이 대답하는 것은 수역이 저들의 말로 奉行에게 말하면, 奉行이 도주에게 전한다. 그래서 主客이 스스로 말을 통하지 못하고, 그 酬酢하는 것이 전적으로 역관의 무리에게 달렸으니, 참으로 귀머거리나 소경이라고 할 만하다.(禮畢, 島主手傳東武書一封, 而文理不成, 且多語錄, 若我國吏吐者然, 使首譯解告, 則蓋是信行時候風審慎之意, 而東武者指江戶也. 申飭於島主, 轉通於信行也, 領留之, 使譯官聽譯以納. [翻書在下] 島主以奉行傳言首譯, 則首譯以我音來告于使臣, 使臣所答, 首譯以彼音言于奉行, 奉行傳于島主. 而主客既不能自通言語, 其所酬酢, 全係於奉行譯舌輩, 誠可謂聾瞽也.)

對馬島 西山寺에서 島主를 통하여 江戶幕府(東武)로부터 온 書信 한 통을 전해 받았는데 마치 조선의 이두문을 보는 듯, 한문과는 전혀 다른 문체의 문장이었다는 것이다. 조엄은 그것을 역관에게 번역하게 하여 여기에 수록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러한 조처는 후대에 통신사행을 갈 사신들을 위한 ‘贍錄冊’(‘先例指針書’의 의미)이 될 수 있도록 한 배려의 일종이라고

20) 이 日記記事는 아래의 소로분 〈1〉과 관련되어 있다.

할 것이다.

비슷한 내용의 기록을 당시 二房書記로 갔던 元重舉의 《乘槎錄》²¹⁾에서
도 살필 수 있다.

(3) 關白이 島主에게 보낸 公文을 자세히 살펴보니 대략 文字(=漢字)는 같지만 그
들의 診文(=假名)이 섞여 있는데 문자는 큰 글씨로 썼고 언문은 작은 글씨로
썼다. 대략 큰 뜻을 연구해 알 수 있었으니, 다음과 같았다.

조선 사람들이 들어올 때 날씨가 조화로울 때야 말할 것이 없지만 바람이
거칠게 불 때는 어떤 지방을 논할 것 없이 반드시 바람이 부는 방향을 살펴
배가 떠날 수 있는 순풍을 기다리고, 그리고 오늘 늦게 내일의 기후를 헤아
려서 출발하도록 하여라. 그들이 배에서 내릴 때는 민간인 집인지 아닌지를
계산하지 말아라.

라고 되어 있었다. (1763년 11월 초4일)

원중거는 스스로 연구하여 候文의 내용을 알 수 있었다고 하였으나, 사실은
三使에게 보고하는 역관의 번역을 옆에서 들었다고 해야 정확할 것이다.²²⁾
같은 《乘槎錄》의 1764년 4월 20일의 日記 記事²³⁾에서도 유사한 내용을
살필 수 있다.

21) 元重舉의 《乘槎錄》은 김경숙 역(2006)을 참조하되, 인용자가 약간의 윤색을 가
하였다. 그 책에는 한문이 부재되어 있지 않아 번역문만 들기로 한다. 이하, 한문
이 함께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들은 다 현대어 번역본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마찬
가지의 사정임을 밝혀둔다.

22) 사행 내내 四文士(製述官과 三書記)와 역관들 사이의 갈등이 매우 심하였기 때문
에, 文士들의 기록에 역관들의 과는 언급되지만 功은 거의 언급되지 않았다. 元
重舉가 ‘역관이 명색은 비록 倭譯이지만 실제로는 倭語를 해석하지 못한다. 또
큰 일은 文字(=漢字)가 있고 작은 일은 草梁의 通事が 있으니 언어가 서로 통하
는 데에 반드시 역관 때문에 근심할 필요가 없다. 다만 마땅히 그 가운데 지위와
명망이 있는 사람을 선택하여 일을 맡기는 것이 좋다. 탐욕으로 인해 義를 잊는
데 이르지 않고 욕심으로 인해 일을 망치는 것에 이르지 않는 사람이 역관의 위
치에 있으면서 접하는 사람은 對馬島人 가운데 오로지 人性을 보존하고 있지 않
은 사람을 넘어서지 않아야 할 뿐이다.’(《乘槎錄》, 1764년 6월 14일)라고까지
말할 정도였다.

23) 뒤에서 언급될 소로분 〈8〉과 관련되어 있는 기사이다.

(4) 대마도 태수가 關文을 내어 놓고 또 자기의 편지를 내어 놓았는데 眞書에 謺文이 간간이 섞여 있었다. 큰 뜻은 위안이었다. 말인즉 바야흐로 엄하게 조사하고 법을 올바르게 하도록 하겠다는 것이었다. 두 장로도 또한 편지를 내어 놓았는데 편지의 말은 江戶에서 監察을 열어 御目付인 曲淵勝次郎으로 하여금 바야흐로 와서 조사를 하게 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별도의 종이가 있었는데,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으면 편지를 써서 보이기를 청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使相이 미땅히 뒤에 답을 하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하셨다.

候文을 眞書(文字=漢字)와 謺文(=假名)의 조합이라고 이해하고 있어, 조엄이 이두문과 유사한 것이라고 이해한 것과 대동소이함을 보인다. 이두문이란 것이 결국은 한문을 바탕으로 하되 語助 부분을 吏讀로 기록한, 일종의 變格漢文의 성격을 띠기 때문이다.

이제 〈저들과 주고받은 글[與彼人往復文字]〉에 수록되어 있는 候文과 그 조선어번역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대체로 번역문이 독해하기 쉽지 않은 모습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번역을 담당한 역관의 실력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1〉 東武憲風翻書 [在馬州府中時]

朝鮮人乘船之節	효선 사름 승선호 때에(씩에) ²⁴⁾
日和見合候儀者	일과를 보와 가며 호기는
勿論候	의논치 말고
乘船懸風波荒候節者	비 타고 가다가 풍파 사오나온 씹는
不及申	니르지 아이호여(안이호여)
何方之陸江茂	아모 륙지예도(륙다예도)
朝鮮人揚可申候得共	효선 사름을(수름을) 하늘호게(하류호게) 호여이 와(호려니와)
左様者無之	그러튼 아니코
今晚與明日者	이 저녁이나(저녁이나) 내일은
強風波茂	센 브람도
可有之哉與存候迄之節者	이시이라(잇시이라)(←이시리라) ²⁵⁾ 너기는

24) 國立中央圖書館本을 大文으로 하되, 朝鮮古書刊行會本의 것과 차이가 나는 곳은 () 속에 朝鮮古書刊行會本의 것을 넣어 두었다. 候文은 한 글자를 단위로, 조선어번역문은 한 어절을 단위로 하여 () 속에 넣었다.

	째써지느(찌꺼지느)
船懸而可有之候得共	비 타 이실지라도
左様之節茂	이런 째도(찌도)
陸江揚可申候	하류한 게 허고
其所家居些少見若(←苦)數候共無其構揚置 그 곳 집이 접더라(—적더라) 훌지라도 게 결이지(—걸이지) 멀고(—말고) 흐눅한 예(흐翕한 예) (←흐류한 게)	
天氣見合候而	텐기을 보와 가며
海上靜成節	항상이 도용흔 씩예(씩예)
渡海可有之候	도희한 게 허음
右之趣	웃 뜻을
其方可相心得旨被仰出候間	게세(개새) 알라 훙는 네이 나스오이(—낫스오니)
可被得其意候	그 뜻을 아옵

[平假名轉字] ちょうせんじんじょうせんのせつ / ひよりみあわせそうろうぎは / もちろんそうろう / じょうせんにかかりふうはあれそうろうせつは / もうすにおよばず / いづかたのりくえも / ちょうせんじんあげもうすべくそうらえども / さようにはこれなく / こんぱんとあすは / つよいふうはも / これあるべきやとぞんじそうろうまでのせつは / ふねにかかりてこれあるべくそうらえども / さようのせつも / りくへあげもうすべくそうろう / そのところのいえいさしようみぐるしくそうろうともそれにかまいかなくあげおき / てんきみあわせそうろうて / かいしょうしづかなるせつ / とかいこれあるべくそうろう / みぎのおもむき / そのほうあいこころえるべきむねおおせいだされそうろうあいだ / そのいえらるべくそうろう

[현대한국어] ^[26] 東武의, 風波에 뒤집힘을 삼가라는 글[대마도 府中에 있을 때]: “조선 사람이 배를 탈 때에 / 날씨가 좋은지를 살필 것은 / 말할 나위 없으며, / 배를 타고 기다가도 풍파가 사나울 때에는 / 말하지 않아도 / 아무 물에라도 / 조선 사람을 오르도록 하려니와, / 그러하지는 않고 / 이날 밤이나 이튿날은 / 거센 풍파도 / 있으리라 여기기까지 하는 때에는 / 배를 타고 있을지라도 / 이런 때에도 / 물에 오르게 하고, / 그곳에 집이 적더라 할지라도 그에 상관하지 말고 물에 오르게 하고, / 천기를 살펴 가며 / 바다가 고요한 때에 / 바다를 건너게 하암.” / 이상의 뜻을 그곳에서 알라는 분부가 내렸사오니 / 그리 아암.

25) ‘(←이시리라)’식으로 적힌 것은 오기나 착오가 일어나지 않았을 경우를 상정해 본 것이다.

26) 정연탁(1975)의 현대한국어 번역문과 당시의 조선어번역문을 다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해사일기』의 일기 부분과 元重舉의 『乘槎錄』에 이와 관련된 기록이 있음은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 있다. 조선어번역문이 독해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표현으로 되어 있다. 당대 사람들도 이 번역문을 읽고서 대체적인 뜻은 알았겠지만 세부적인 사항까지 낱낱이 다 알았을 것 같지는 않다.²⁷⁾

〈2〉 回答

貴國飲禁制	귀국 술(술) 먹기를 금하시는 법이라
先達而	져금식(←저즘식)
以御書翰委細被仰聞候付則	서간으로써(서간으로써) 즐세히(자세히) 별호여(그별 호여) 계시미(개시미) 즉시
東武江御伺申上候處	동무에 엇지 ²⁸⁾ 흐 오릿가(엇흐 오릿가) 알외엿습더니
任御斷	니으신(←너르신) 터로
內御饗應之節御酒出候儀并被下物之內御酒相添來候分	연향 씩 술(술) 일과 보늬(← 보늬) 것 뉘 숙(술) 보닐 계
御酒計者被相止	술꾼 말게 흐고
尤海陸御馳走所音物酒相添候儀並相止候樣	맛당이 히눅(히룩) 격기소 선물 술(술) 보 늬(←보닐) 일도 그치게 흐고
被仰出候	알게 흐여 계시외다
且又	또
於東武御目見之	동무에 뵈을(←뵈울)
節	씩
御杯頂戴之儀者	술잔(술잔) 칭호실 일을
參府之上相司候節	오신 후 서로(서로) 엇지흘고 흐실 씩예(씩예)
何連共	아모리나
可被仰出與之御事	알게 흐련노라 흐신 일
此節申來候	이제야 널너 왓느이다

[平假名轉字] きこくいんきんせい / せんだつて / ごしょかんをもつていさいおおせ
きかれそうろうにつきすなわち / とうぶへおうかかいもうしあげそうろうところ /
ごだんにまかせ / うちにごきょうおうのせつごしういたしそうろうぎならびにくださ
れものうちごしゅあいそえきたりそうろうぶん / ごしゅばかりはあいやめられ /

27) 『捷解新語』 권10의 候文도 원래 종결문인 것을 연결문의 조선어로 번역한 사례
가 많음과 표현이 다소간 잘못된 곳이 군데군데 있음이 이미 언급된 바 있다. 이
에 대하여는 林昌奎(2009a, b; 2011)을 참조하기 바란다.

28) 傍註로 ‘지’가 적혀 있다.

もつともかいりくのごちそうのところいんぶつさけあいそえそうろうぎもあいやめそ
うろうよう / おおせいたされそうろう / かつまた / とうぶにおいておめみえの /
せつ / ごはいちょうだいのぎは / さんぶのうえあいつかまつりそうろうせつ / いす
れとも / おおせいたさるべきとのおんこと / このせつもうしきたりそうろう

[현대한국어역] 회답: 貴國이 술 마시는 것을 금하시는 법이라서, / 지난번에 / 書翰으로써 자세히 기별하여 주셨으매, / 東武에 “어찌하오리까?” 하고 아뢰었더니, / ‘말씀하신 대로 / 韻應 때에 술을 내는 일과 보낸 물건音物=贍物 가운데에 술을 곁들여 보낼 적에, / 술만은 그만두게 하고, / 마땅히 海陸產物 대접과 賞物에 술을 곁들이는 일도 그만두게 하고(?)하라고’ / 분부하셨습니다. / 또한 / ‘東武에서 뵈올 / 때에 / 술잔을 드실 일稱杯を/ 幕府에 오신 뒤에 서로 ‘어찌할까’ 하고 의논하실 때에 / 어떻게 해서든지 / 알게 하려고 하노라.’ 하신 일을 / 이제서야 기별하여 왔습니다.

이 〈2〉의 내용은 《해사일기》의 1763년 11월 5일자 일기 기사 및 12월 13일자 일기 기사가 관련되어 있다.

(5) 집때 佐須浦에 있을 때, 우리나라의 酒禁이 지극히 엄하기 때문에, 저들의 單子 가운데 술이 있는 것은 문득 물리치고 받지 않았으므로, 馬島 太守가 감히 다시 올리지는 못하면서 말하기를, “本島는 이미 귀국의 酒禁을 알지만 앞으로 가는 곳은 알지 못하고, 또 關白이 잔치를 내릴 때에 구애되는 事勢가 많을 것입니다. 宴禮에 관계되는 것은 □傳으로 시행할 수 없으니, 사신의 몇 줄의 文字를 얻으면 연로에 通諭하고 關白에게 傳告하여, 잔치 때 往復하는 일이 없게 할 수 있겠습니다.” 하므로, 세 사신이 상의하기를, “이 술을 사양하는 것은 우리에게만 있을 뿐이다. 저들이 만약 보내오는 것을 우리가 받지 않는 것은 미하거니와, 술이 만약 往來한다면 우리들이 아무리 돌려보낼지라도 중간에서 없어지지 않을 줄 어찌 알겠는가? 무식한 下賤輩들 역시 반드시 이로 인하여 먹을 마음이 생길 터이니, 도주에게 효유하여 애당초 술 ‘酒’字 한 字는 서로 들리지 않게 하는 것만 못하다.” 하여, 두어 줄 書啓를 지어서개는 아래에 있다. 수역을 시켜 도주에게 전하였다.(頃在佐須浦時, 以我國酒禁之至嚴, 彼人單子中有酒者, 暫退却不捧, 馬島太守雖不敢更進, 而以爲本島則已知貴國之禁, 而前路既不知之, 且關白賜宴時, 事勢多掣碍者, 宴禮所關, 不可以□傳施行, 若得使行數行之文字, 則可以通諭於沿路, 傳告於關白, 俾無宴享, 臨時往復之事云, 三使相議以爲, 惟此辭酒, 在我而已, 彼若送來, 我自不受則可矣, 而酒若往來, 則吾輩雖還送, 安知不消融於中間乎, 無識下賤, 亦必因此而生心, 不如曉諭島主, 使之初不敢以一酒字相聞之爲愈矣, 乃構數行書契[書契在下] 使首譯傳于島主.) (11월 5일)

(6) 접때 ‘술을 물리치라.’는 뜻으로 馬州 太守에게 글을 보내었더니, 지금 馬州 太守가 東武의 회답번역한 글은 아래에 있다.]을 보내어 보여 주었는데, 글의 사연은, ‘宴享의 支供은 그만두게 하겠으나, 東武에서 잔 드는 것稱杯은 府에 참석한 뒤에 다시 의논하자.’는 뜻으로 말하였다 한다. 筑前守가 도미와 素麁을 보내았으므로 일행에게 나누어 주었다. 약과 등 대여섯 가지를 馬島 太守·奉行·裁判 등이 이 섬에 도착한 뒤에 먹었으니, 準例다.(頃以却酒之意, 送書於馬州守, 卽者馬州守送示東武回答『翻書在下』書辭以宴享支供則相止, 東武稱杯參府後更議之意爲言云矣。筑前守送鰣魚素麁, 故分給行中, 以藥果等五六種饋問, 馬島守奉行裁判等, 到此島後例也。) (12월 13일)

물론 이 禁酒 내지 酒禁과 관련된 소동은 江戶에 도착한 뒤에도 계속된다.

조선에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 禁酒令이나 戒酒令 또는 戒酒綸音이 내려진 바 있다. 특히 영조대에는 매우 강한 계주윤음이 내려졌다. 1756년에 《御製戒酒綸音》을 ‘口訣文 + 諺解文’의 전형적인 형식을 잘 갖추어 목판본으로 제작하여 배포하였으나, 별다른 효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1762년에는 《御製警民音》을 순한글의 목활자본으로 만들어 배포하였다. 앞의 것이 번역문의 내용이 소루하고 오류가 많다고 판단하여 일반 백성들까지 다 잘 알 수 있도록 뒤의 것은 순한글로만 작성하였다는 것이다(이영경 2013 참조). 이렇듯 계주윤음으로 인하여 조선 전체가 政丞·大臣으로부터百姓들에게 이르기까지 죄다 몸살을 앓고 있었던 사정을 반영하여, 통신사행들도 외교적 결례를 무릅쓰면서²⁹⁾ 금주를 행하고 있는 것이다. 영조 임금에게 보낸

29) “잔치할 때에 잔을 바꾸어 드는 것은 저들의 접대하는 준례이다. 지금 우리의 술잔은 비록 맑은 차로 대신하지만, 저들의 술잔은 알 수 없다. 만약 술잔을 바꾸어 든다면 이는 술을 남에게 권하는 것이 된다. 저들이 스스로 마시는 것이야 우리가 어찌할 수 없지만, 우리 손으로 술잔을 잡는 것은 義理에 不可하므로 미리 首譯으로 하여금 이런 뜻으로 往復하게 하였다. 그래서 술잔을 바꾸는 일은 폐하여 행하지 않고 서로 읍하고 나았다.(宴享之時, 換盃相稱, 乃接彼人之例也。今則我酌雖代以清茶, 彼酌旣未可知, 若換盃而稱之, 則是以酒勸人也。彼人之自飲, 我無奈何, 而我手之執酒盃, 於義不可, 故預使首譯往復此意。換盃一節, 碗却不行, 相揖而出。)”(《해사일기》, 1763년 11월 6일) 및 “일본의 풍속으로는 모든 잔치에 있어서 술을 미주 드는 것을 첫째기는 예절로 삼는다고 하는바, 신동이 대마도에 닿았을 때에 ‘우리나라에서 술을 금하는 법이 아주 엄중하여, 조선의 臣民인 사람으로서는 감히 입에 가까이하지 못할 뿐 아니라 감히 손을 가까이 하지도 못한다.’라고 사연을 꾸며서 對馬守 平義暢에게 글을 보내어 關白에게 옮겨 고하게

狀啓에서도 금주를 잘 지키고 있음을 자랑심아 보고하고 있고(《해사일기》, 권5, 〈狀啓〉 1764년 5월 6일), 영조 임금은 그것을 칭찬하고 있다(《해사일기》, 권5, 〈筵話〉 1764년 6월 13일).

이것은 조엄의 융통성 없는 성격과도 관련되는 듯하다. 한국한 후 復命하는 자리에서 영조 임금이 조엄의 성격이 지나칠 정도로 고집스럽다고 몇 번이나 언급할 정도로 조엄은 대외적으로나 대내적으로 고집스러운 면을 보였다.

(7) 上이 刑曹參判에게 명하여 앞에 나오게 하고, 領相을 돌아보며 이르기를, “趙某는 고집스러운 점이 많다. 이번 사행의 인삼을 꿀에 담근 蜜蓼이 있었는데, ‘捧上에는 이런 일이 없으니 받아둔 뒤에 色庫의 해당 肅吏들이 농간을 부린 것’이라 하므로, 죄를 주어 다스리기를 特奏하게 하였었다. 어제 공초한 말을 보니, 세 首譯이 監封(점 꾸리는 것을 감독함)하여 두었으므로 그들이 알바가 아니라 하니, 그런 듯하므로 놓아 보내게 하였다. 또 듣건대, 洪啓禧가 가던 때에는 10여 斤이라 하던데, 이번에는 한 근뿐이라 하니, 역시 이상한 일 이로되,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곧 趙某의 고집이다. 듣건대, 이번에 上使가 가장 어려움을 겪었다 하거니와, 상사가 國書를 지니고 대기하였다는 것은 참으로 현명하다. 이미 돌아온 뒤에도 그 마음이 역시 그러한 듯하거니와 군관 權宰에 관한 일은 또한 지나친 듯하니 正使에게 한 번 묻고자 한다. 이제 刑參이 입시하였으니 그것을 알 듯하다.”(上命秋參進前, 顧謂領相曰趙某多固執處矣. 今番使行人蓼有沈蜜而謂以捧上, 則無如此之事, 捧置後色庫該吏輩用奸云, 故令科治特奏矣. 昨覽供辭則三首譯監封以置, 非渠輩所知云, 此則似然, 使之放, 且聞洪啓禧去時則十餘斤云, 而今番則只一斤云, 亦是異事, 而至於如此, 此乃趙某之固執也. 聞今番上使最困矣, 上使抱國書之事誠賢矣, 既還之後, 其心亦似如此矣, 軍官權宰之事亦似過, 欲一問之於正使矣, 今者刑參入侍, 似知之矣.) (《海槎日記》 卷5, 〈筵話〉, 7월 8일)

그 사달은 조엄이 이미 狀啓를 통하여 副使騎船의 破損 문제와 蜜蓼 문제를 보고하면서 당사자의 처벌을 강청한 바 있었으면서도 다시 복명하는 자리에서 그 사안을 거론한 데에서 비롯한다.

하였사옵니다.(日本之俗, 凡於宴禮, 以酒相稱爲第一禮節是如爲臥乎所, 臣等到馬州時, 以我國酒禁, 至爲嚴重, 爲朝鮮臣民者, 不惟不敢近口, 亦不敢近手之意, 措辭移書於對馬守平義暢, 使之轉告於關白是白如乎.)”(《해사일기》 권5, 〈狀啓〉 1764년 5월 6일) 등이 이에 참조된다.

(8) 復命하는 일로 入侍하였을 때에, 조엄이 아뢰기를, “交隣하는 도리는 誠信이 귀중하니, 禮單 등의 물건은 본디 참 마음으로 정하게 준비하여야 하므로, 聖教로 전후 여러 번 간절히 申飭하셨습니다. 인삼으로 말하면 약으로 쓰는 데에 관계되므로 더욱 조심을 해야 하는데, 이번 사행이 가지고 간 품질이 비록 무진년 때의 것보다 못하지 않다고는 하나, 그 가운데에 蜜夢이 많았습니다. 이른바 밀삼은 꿀에 담가서 그斤量을 무겁게 한 것이니, 비록 약에 넣더라도 그 변한 성질로 효력이 없는데, 어찌 차마 醫藥의 물건을 가지고 먼 나라 사람을 속이겠습니까? 이 때문에 신등이 譯官으로 하여금 맛보게 하여 하나하나 가려내어 그중의 담그지 않은 것은 예단으로 봉해서 주고, 모자라는 것은 사신들의 약으로 쓰는 삼으로 채워 주었으며, 執政 한 사람에게 주지 않은 禮單夢 한 근에 같음하여 반납해야 할 것은, 밀삼으로 지금 막 地部에 봉해서 반납하였습니다. 인삼을 꿀에 담그는 폐습은 5~6년 전부터 비롯하여, 장사 통역(商譯)들이 그 작은 이익의 보탬을 탐내던 것인데, 마침내 국가가 交聘하는 禮幣에까지 들어왔으니, 이는 참으로 이웃 나라에 들리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대개 듣건대, 신사 행차 때에 三道(충청도·전라도·경상도)에서 상납한 인삼을 地部에서 가려 받지 않은 것은 아니나, 지부에 받아 두고 달을 넘기고 해를 지내매 반드시 중간에 놓간이 있어서 그런 것이라 합니다. 이런데도 엄히 정벌하지 않는다면, 어찌 국가에 기강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당해 당상관과 낭청에게는 살피지 못한 죄를 베풀지 않아서는 안 되며, 담당 色庫直(창고지기)은攸司로 하여금 엄히 따져서 중하게 벌주게 하여 뒷날의 폐단을 막는 것을 단연코 그만둘 수 없습니다. 감히 이에 우러러 아립니다.”라 하니, 상이 명하여 傳教를 쓰게 하였다. 또 아뢰기를, “신등이 바다를 건너는 배가 잘 만들어지지 않은 일 때문에 전에 벌써 狀聞하였거니와, 統制差使員은 이미 論罪되었으나, 그 감독을 주장한 직책은 統營에서 거느리는 군관 권재라는 사람인데, 듣건대 배를 만들 때에 本營의 監色들과 물건을 받아들이고 내어주면서 놓간을 부려 훔쳐 먹었다 하니, 오직 草草하게 끝내어서 배의 기틀이 연약하여 거의 위태한 지경을 당하게 하였습니다. 이 밖에 营邑의 監色과는 차이가 있으니, 각별히 엄한 戒飭을 가한 뒤에야 뒷날을 징계할 수 있습니다. 전 통제사 군관 권재를 형조로 하여금 엄중히 刑訊하여 定配하게 함이 어떠하리까?” 하니, 상이, “그대로 하라.” 하였다.(復命入侍時, 趙曠所啓交隣之道, 貴在誠信, 禮單等物, 固當以實心精備, 聖教申飭, 前後屢擊. 而至於人夢, 藥用所關, 尤當致念, 而今行所齎去等品, 雖不讓於戊辰, 其中多有蜜夢, 所謂蜜夢, 以蜜浸漬, 取其斤重者也, 雖入藥餌, 以其變性而罔效, 豈忍以醫藥之物, 而欺遠人乎. 是故臣等使譯舌, 一一揀出其不爲浸漬者, 封給禮單, 而不足者, 以使臣藥用夢充給, 至於執政一人除減代禮單一斤之當爲還納者, 以蜜夢今方封還於地部矣. 人夢蜜漬之弊, 始自五六年來, 商譯輩貪其小利之資, 終入於國家交聘之幣, 此誠不可聞於隣國者. 蓋聞信行時, 三道上納人夢, 自地部非不擇捧, 而捧留地部, 閱月經年, 必有所中間幻弄而然也. 此而若不嚴懲, 其可曰國有紀綱乎. 當該堂郎, 不可不施以不察之罪, 該掌色庫直, 令攸司嚴查重繩, 以

杜後弊，斷不可已，敢此仰達矣。上命書傳教，又所啓臣等以渡海船隻之不善制作事，曾已狀聞，統制差使員，既已論罪，而若言其主張監督之役，則統營帶率軍官權宰爲名人，聞其制船時，與本營藍色等，受出物力，幻弄偷食，惟以草草了當，以致船機脆弱，幾遭殆危者屢矣，此外營邑藍色有異，別加嚴飭，然後可憲他日。前統制使軍官權宰，令秋曹嚴刑定配何如。上曰依爲之。) (《해사일기》 권5, 〈筵話〉, 7월 8일)

〈3〉 東武執政以副船事致關白慰問之語 [在室津時]

東武執政方自	동무 집정세로서
以繼船申來候者	참비로써(참비로써) 고별호기는
副使騎船筑前藍島而	스마선이 축전 남도에서(남도에서)
難船之段	비 상흔 일
達上聞	우히 드오시고(드으시고) (—드르시고)
其節	극(그) 씩
端船自御揚陸無御別條之段	벗두리로 하늘흐서(하늘흐서) 다른(다란) 일 업 손 즐
珍重思召候	깃비 너기시고
猶亦	더욱
可相尋旨被仰出候而之儀	듯즘는 矢을 전하라 희시(희신) 일이
去五日	거번 초오일
伊豫國之內於津和浦相達候	이예국(이에국) 뉘 진화포에 와나이다(왓나이다)
御請之儀	회답호시는 일은
取繕可申上候得共	죠토록 흐오린이와
於江府執政之內客館江可被相越候間	강부에서 집정 증 직관에 오실 쐐시니(쐐시니)
御禮被仰達可然存候	사례호시미 죠흘가 너기느이다

[平假名轉字] とうぶしつせいかたより / つきふねをもつてもうしきたりそうちろうは / ふくしきせんちくぜんあいのしまにて / なんせんのだん / じょうぶんにたつし / そのせつ / はしふねよりごようりくごべつじょうのだなんく / ちんちょうにおぼしめしそうちろう / なおまた / あいたずぬべきむねおおせいだされそうちろうてのぎ / さるいつか / いよのくにのうちつわうらにてあいたつしそうちろう / ごせいのぎ / とりつくりもうしあぐべくそうちえども / ごうふにおいてしつせいのうちきやくかんへあいこさるべくそうちろうあいだ / おれいおおせたつせられしかるべくぞんじそうちろう

[현대한국어역] 東武의 執政이 副船의 일로 關白의 慰問을 전해 온 말: 東武의 執政에게서 / 繼船(站배)을 통하여 기별하여 오기는, / *副使騎船이 筑前州 藍島에서 / 배를 상하게 된 일을 / 위에서 들으시고서, / 그때에 / 端船으로 물에 오르셔서

별일이 없으셨음을 / 기뻐하시고, / 더욱 / 위문하라는 뜻을 전하라.' 하신 일이, / 지난 5일에 / 伊豫國 안의 津和浦에서 전해 왔나이다. / 회답하시는 일은 / 좋도록 하겠거니와(修繕해 드리도록 아뢰겠거니와), / 江戶幕府 執政 가운데서 (한 사람이) 客館에 오실 것이니, / 謝禮하심이 좋을 것으로 여기나이다.

『해사일기』의 1764년 1월 14일자 일기가 이와 관련이 있다. 물론 소로분 〈1〉과도 관련이 있는 내용이다.

(9) 선창에 배를 정박하니 館門이 거기서 5~6보에 불과했다. 국서를 받들고 관소에 들어서니 정하게 지은 관사와 사치스러운 기물들이 또한 기기묘묘하였다. 이곳은 蟠摩州 소속으로 태수는 源忠知인데 무진년에 首執政을 지낸 자였다. 그는 杉重을 일행에게 보내고 小童까지도 饌果를 대접하였다. 대마도의 도주가 와서 뵙고 소매 속에서 東武의 편지를 꺼내어 전한다. 이는 副騎船의 손상에 대한 關白의 위문이 있어서였다. 도주를 대하니 도주는, “江戸에 도착하면 執政이 영접할 것인데, 반드시 이 문제를 별도로 위문하고 치사할 것입니다.……”라고 했다.(入泊船滄, 館門不過五六步. 奉國書入館所, 館舍之精構, 什物之侈奢, 亦涉奇巧. 地屬播磨州, 太守源忠知, 戊辰首執政也. 送杉重於一行, 至於小童, 亦有饌果之饋矣. 馬島守來見, 袖傳東武書, 以副騎船之破傷, 有關白之慰問故也. 相對時島主以謂到江戸後, 當接執政, 必以此別問致謝云云矣.)

〈4〉 東武以使行到坂城慰問之語 [在大坂時]

東武執政方自	동무 집정계로서
拙者方江	우리개
御奉書以宿繼到來之處	글월을 참참보횡으로써 앗습는다
各儀先月二十日大坂着岸之段達上聞	대되(티되) 선월 이십일 대판에(티판에)
遠境來聘大儀被思召候	오신 일 드르시고
此旨致傳達候様與之御事候	멀니 오시니 슈고롭다 힙서 이 쓰을(=뜻을) 전달게(전달케) 흐신 일이로 소이다

[平假名轉字] とうぶしつせいかたより / せつしゃかたへ / ごほうしょやどつぎを
もつてとうらいのところ / おのおのぎせんげつはつかおおさかちゃくがんのだんじょ
うぶんにたつし / えんきょううらいへいたいぎにおぼしめされそうろう / このむねで
んたついたしうろうようとのおんことにそうろう

[현대한국어역] 東武가, 사신 행차가 大坂城에 닿았을 때 위문한 말[大坂에 있을

때: 東武의 執政으로부터, / 우리에게 / 書狀이 宿繼(姑站步行)로 이르러 왔사온데,
/ 죄다 지난 달 20일에 大坂에 오신 일을 위에서 들으시고, / ‘먼 곳에 오셨으니
수고하였다.’ 하시고서, / 이 뜻을 전달하게 하신 일이었습니다.

《해사일기》에는 해당 내용이 안 보인다.

〈5〉 以 國³⁰⁾書前犯馬倭人查治事島主伴語 [在洲股時]

今日於途中	오늘(오날) 길히서
御通興御滯之日(—由)相聞候付	수[る] 지테[滞]신 연유을 듯습고
如何而	엇지[何]여
御通行延引之事候哉	길히 연인[延]실 일인고
使者以申演候處	스자로써(수자로써) 고별[延]한 엇습는[处]
右使者不罷歸前多田監物旅宿江罷出委細申聞承之驚入候尙又吟味差詰申付様之次第追而 可得貴意候	스자 도라오지 아인(—아닌) 견예(견에) 다전 감 풀이(감풀이) 下處에 와서 주서히(자서히) 닐으 미(일으미) 드습고(— 들품고) 놀나와 오히려(요 히려) 또 사회[事]하여 죄을(죄를) 주옵기는 츄후 고별[延]한 옵새다(고별[延]한 옵시다)
是迄無(—無事? 無異?)御着大慶存候 예[よ]어지 무수이 옴이 드경이오며	
旁使者遠以申述候	겸[かた]하여 스자로써(수자로써) 알외나니다(알외 나이다)

[平假名轉字] きょうとちゅうにおいて / おかよいこしおとどこおりのよしあいききそ
うろうにつき / いかがして / ごつうこうえんいんのことこそうろうや / ししゃを
もつてもうしのべそうちうろくところ / みぎししゃまかりかえらざるまえただけんもつ
りょしゅくへまかりいでいさいをもうしききうけたまわりおどろきいりそうちうなお
またぎんみさしつづもうしつくるようとのしたいおつてきいをうべくそうちう / ここ
までぶじにおつきたいけいにぞんじそうちう / かたわらししゃをもつてもうしのべそ
うちう

[현대한국어역] 國書 앞을 말을 탄 채 가는 무래를 범한倭人을 따져서 다스리는
일로 도주가 사람을 시켜서 전해온 茂洲股에 있을 때: 오늘 길에서 / 수레를 멈추
신 연유를 듣고서, / ‘어찌하여 / 가시는 것을 늦추실 일인가.’ 하여 /使者를 시켜

30) 한 칸을 띠운 것은 空格 내지 間字의 방식이 사용된 것이다.

서 기별하였사온데, / 그 사자가 돌아오기 전에 多田 監物이 旅館에 와서 자세히 말하매, 듣고서 놀라워 오히려 따져서 벌주기는 추후에 기별하십시오. / 여기까지 별일 없이 오심이 크게 기뻐할 일이오며, / 겸하여 사자를 통하여 아뢰나이다.

이 소로분 〈5〉는 아래의 소로분 〈6〉과 함께 살피는 것이 좋을 것이다.

〈6〉 國書前犯馬倭人查出縛送馬島事島主併語 [同日]

先刻以使者申述候	앗가 수자로써(수자로써) 고별호여는이다
今日於途對	오늘 길회서
國書不禮候者段段遂吟味候處	국서의 무례호(무례흔) 놈의 일 사회 호온즉
最初者一人與	처음은 혼 놈이라
相聞外二	듯즈온 뱃끼(박끼)
今一人徒士之者	이직 혼나 것인 놈
相如居(居)兩人致不禮候段相顯無相違候依之拙者了簡之筋有之於國元屹度科二申付候覺悟二御座候	긴접호와 ³¹⁾ 두 놈이 무례호온 일 드어(←드라) 나온 이 어긋나지 아이호오니(아니호오니) 이라무로 이 편 성각의 근본이 잇수오미 마도에서 重法으로써(重法 으로써) 다스리울(다사라을) 거시오니
尤於當訴屹度申付樣之品毛有之候得共	맞당이 이곳에서 重治호을(重治호을) 거시 오되
旅中之儀故	직증 일이기예(일이기예)
先國元江	못져(몬져) 마주에
差下置追而歸國之上重科可申付候間左樣御心得此節之所御用捨被下候樣希存候	보내여 두옵고 쪼초 귀국호온 후(후) 중치호을(중치 호을) 거시니 이런 줄(줄) 아옵쇼서(아옵소서) 그 씩 예(씩예) 용샤호야 주실(주신) 얄으로(양으로) 기드 리나이다(기다리나이다)
仍而右兩人之者共直二今晚歸國申付候右爲御斷以使者申述候	인호여 이 두 놈들 바로 이 밤의 귀도호게 본부호여 나이다(분부호여나이다) 이 수연을 수자로 알외나이 다

[平假名轉字] せんこくししゃをもつてもうしのべそらう / きょうとたいにおいて / こくしょれいならずそらはばだんだんぎんみとげそらうところ / さいしょはひと

31) ‘相如居(居)’에 대한 번역어인데, 정확하게 무슨 뜻을 가진 것인지 알기 어렵다.

りと / あいきくほかに / いまひとりかちのもの / あいおるごとくりょうにんぶれい
 いたしそうろうだんあいあらわれそういなくそうろうこれによりせつしゃりょうけん
 のすじこれありくにもとにおいてきつととかにもうしつけそうろうかくごにござそう
 ろう / もつともとうそにおいてきつともうしつけるようのしなもこれありそらえど
 も / りょちゅうのぎゆえ / ますくにもとへ / さしくだしおきおつてきこくのうえ
 じゅうかもうしつくべくそうろうあいださようおこころえこのせつのところごよう
 しゃくだされそうろうようのぞみぞんじそうろう / よつてみぎりょうにんのものども
 すぐにこんばんきこくもうしつけそうろうみぎおことわりなされししゃをもつてもう
 しのべそうろう

[현대한국어역] 국書 앞을 말을 탄 채 지나가는 죄를 범한 倭人을 따져 내어 대마도로 묶어 보내는 일로 도주가 사람을 시켜 전해온 말같은 날: 아까 使者를 통하여 기별하였나이다. / “오늘 길에서 / 국서에 무례하였던 자의 일을 따져 낸즉, / 처음에는 한 사람이라고 / 들은 것 외에, / 이제 또 한 사람의 徒士(歩卒)가 / 있어 두 놈이 무례를 저지른 일이 드러나오니 틀림없사옵기에, 이러므로 저에게 생각하는 바가 있사오며 대마도에서 重法으로써 다스릴 것이오니, / 마땅히 이곳에서 重治하을 것이오되, / 여행 중이므로 / 먼저 대마도에 / 보내어 두고, 추후에 대마도에 돌아가서 매우 다스릴 것이니, 이런 줄 아십시오, 그 때에 용서하여 주실 것으로 바라나이다.” / “따라서 이 두 놈을 바로 이 밤에 대마도로 돌아가게 분부하였습니다.” 이 사연을 사자를 통하여 아뢰나이다.

이 소로분 〈5〉, 〈6〉의 내용은 《해사일기》 1764년 2월 3일자 일기가 관련되어 있다.

(10) 洲股의 관소에 도착하니 이곳은 尾張州의 소속인데, 站官이 태수 源宗睦의 뜻으로 杉重을 올렸다. 태수는 곧 3종실의 하나로 직위가執政의 윗자리에 있었는데 그 거행하는 凡節을 보매 꽤 조리가 있어 사람됨을 상상할 수 있었다. 國書의 앞에 말을 타고 범한 왜인이 있다고 하므로, 일이 몹시 통탄스러워서 首譯을 엄하게 문책하고 差倭를 꾸짖어, ‘그를 찾아 다스린 뒤에 결과를 보고 받고서 전진하겠다.’고 하니, 奉行 등이 뜰아래에 서서 황공하여 대죄하고, 말하기를, “도주가 이미 먼저 떠나갔으므로, 지금 飛報했습니다.” 하더니, 얼마 후 도주가 잇따라 종을 보내서 말을 전하는데, [종의 말은 번역하여 아래에 있다.] 거기에 이르되, ‘이미 두 사람을 수사하여 당일로 대마도에 압송했다.’고 하였다.(到洲股館所, 地屬尾張州, 站官以太守源宗睦意呈杉重, 太守即三宗室之一, 而位在執政之上, 觀其舉行凡節, 頗有條理, 可想其太守之如人也. 國書前有犯馬倭人云, 故事極痛駁, 嚴責首譯, 責諭差倭, 使即查治後, 告諭前進云爾, 則奉行等立于階下, 驚惶待罪, 以爲島主已先行, 今方飛報云, 已而島主連送件語[件語翻]

贍在下 謂已查究兩人，當夜縛送島中云矣。)

그런데 다른 번역문들은 다 한글로만 되어 있으나, 이 〈5〉와 〈6〉에서는 간간이 漢字로 적은 단어들이 보인다. 〈5〉의 ‘下處’, 〈6〉의 ‘重法’과 ‘重治’ 등이 그것이다. 《捷解新語》 권10에 수록된 候文의 번역문들(改修本과 重刊本의 것들)도 다 한자가 섞인 이른바 國漢文體로 되어 있으니 이는 전혀 이상한 일은 아니다.

그런데 元重舉의 《乘槎錄》에도 이 사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서술되어 있는바, 이에 대한 그의 평가와 시각이 독특하여 관심을 끈다.³²⁾

(11) 이날倭의 通詞인 吉郎兵五의 奴婢가 말을 타고 國書를 지나가 버린 일을 저질렀는데, 5리를 가서도 말을 내리지 않았다. 僉使 許圭가 화를 내고 말에서 내려 채찍을 들고는 말에 앉아 있는 그자의 대나무 삿갓을 쳤다. 그랬더니 그倭人도 또한 놓동이를 들고 와서 대항하였다. [중략] 使相이 세 首譯으로 하여금 島主에게 가서 말을 하여 죄를 다스리게 하였다. [중략] 대개 저들 나라의 風俗에는 짐을 실은 말을 타고 가는 사람에게는 말을 犯하는 것을 禁하는 법이 없다. 허구가 화를 낸 것은 저들의 風俗을 몰랐기 때문이다. 後에는 마땅히 알아 賢戒해야 할 것이다. (1764년 2월 초9일)

일종의 文化差異 내지 文化衝突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7〉 傳 命³³⁾翌日島主以無事行禮來致謝語 [在江戶時]

昨日者大禮無滯相濟
御安心之程察存候

어제(어제) 대례를 무테이 못 손오니
안심호실 줄 아나이다

32) 元重舉의 《乘槎錄》 1764년 2월 28일의 기록에도 그의 독특한 시각이 엿보인다. “狀啓를 密封하여 보내니 이는 傳命을 한 다음에 있는 儀禮였다. 서울에 편지를 보내는데 예로부터 중간에 저들이 열어 볼 것을 염려하여 使相이 일행에게 諺文으로 편지를 써서 보내도록 했었다. 그러나 저들이 우리의 諺文을 익혔다면 우리가 우리말을 아는 사람으로 하여금 보도록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러므로 諺文도 또한 저들의 눈을 가릴 수 있는 방법은 아닌 것이다. 오직 편지는 그 말을 쓸 때 眞書로 써서 보내는 것이 마땅할 것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33) 한 칸 띄운 것은 空格 내지 間字의 방식이 사용된 것이다.

然者	그러나
異國之儀禮俗各殊候處	이국 예속이(래속이) 각 : (각각) 다른 데(다른 데)
兼：(兼)御心遠取用候故	미이 : : (마이)마이)(←미리미리) 무 음을(마음을)
	쓰기시에(쓰기시에)(←쓰시기에)
進退周施(旋)皆中規矩	진퇴주선이(진퇴주선이) 다 규구예(규구예) 맞고
乃至一行共出入拜趨(趨)不失其儀	이에(이에) 일횡들의게 일으시(일으사) (←니르사)
	출입비추에(출입비추에) 불실기의 흐오오니
	(불실기의 흐오시니)
列居之官僚諸太守何蔑	버리(버려) 잇는(잇는) 제관료 제특수(제특수) 뒤되
觀聽遠聳朝議噴：(噴)稱歎不已	관청을(광청을) 용동호여 죄의칙 : (죄의칙칙)
	칭탄불이 흐오니
至拙者慶幸無此上事存候	졸자의개신지(졸자의개신지) 경횡이 : (이) 우하(우회) 업손(업산) 일로 아나이다
且從行之人初而之昇殿觀光之志茂可有之處	笙 종횡인이 첨음(처음) 승전호여 관광 쫓도 잇수오되
各別嚴重之場所故	각별 엄증호(엄증호) 곳나기여(곳이기에)
奉行以下不任其意殘多事候	봉횡 이하 임의로 못호여 셉 : 혼(섭섭혼) 일일로 소이다(←일이로소이다)
御恕諒可被下候	서냥호여(←서량호여) 쥬쇼서(←주쇼서)
此段茂	이 일도
乍序述候	벼개옵개이와(←벼개옵거니와) 아뢰느니다(아뢰나 이다)

[平假名轉字] きのうはたいれいとどこおりなくあいすみ / ごあんしんのほどさつしそんじそうろう / しかれば / いこくのきれいぞくおののおのことなりそうろうところ / かねがねおこころをとりもちいそうろうゆえ / しんたいいしゅうせんみなきくにあたり / ないしいつこうどもでいりはいすうにそのぎをうしなわづ / れつきょのかんりょうしょしたいしゅいぎれも / かんちょうをおそれちょうどぎさくさくしょうたんぶい / せつしゃにいたりけいこうこのうなえきことにぞんじそうろう / かつじゅうこうのひとはじめてのしょうでんかんこうのこころざしもこれあるべきところ / かくべつげんじゅうのはしょゆえ / ぶぎょういかそのいにまかせずのこりおおきことにそうろう / ごじょりょうくださるべくそうろう / このだんも / ついでながらのべそうろう

[현대한국어역] 傳命한 이튿날에 島主가 무사히 예를 지낸 것을 와서 사례한 말(江戸에 있을 때): 어제는 大禮를 치체됨이 없이 마쳤사오니, / 안심하실 줄로 생각합니다. / 그러나 / 다른 나라 예절과 풍속이 각각 다른데, / 미리미리 마음을 쓰셨으므로, / 모든 행동이 다 법도에 맞고, / 일행에 이르러서도 높은 분 앞에서의 행

동에 / 예절을 잃지 않으오니, / 나열해 있던 여러 官僚와 여러 太守들이 모두 / 보고 듣기에 聲動되어 朝廷의 의논들이 다투어 稱歎하여 마지않으니, / 저에게도 경사스럽고 행복함이 이 위에 더 없는 일로 여겨나이다. / 또한 따라 모신 사람들이 이 처음으로 殿堂에 들어가 觀光할 뜻도 가셨으되, / 각별히 엄중한 곳이므로, /奉行 以下가 뜻대로 하지 못하여 섭섭한 일이었소이다. / 용서하여 주소서. / 이 일도 / 아울러(다음 번 것이거니와) 아뢰나이다.

‘傳命’(일본에서는 ‘登城’) 의식을 무사히 마쳤음을 말하고 있다. 『해사일기』의 1764년 2월 28일자 일기가 이와 관련이 있다.

(12) 흐림. 江戶에 머물렀다. 낮에 對馬島 太守 및 두 長老가 와 뵈었다. 도주가 筆談을 바쳤는데,[필담은 아래에 있음.] 대개 이는 왕명을 무사히 전하고 禮度에 절차가 있었음에 대한 致賀였다. 인삼차를 한 순배 하고 헤어졌다.(陰, 留江戶, ○午間, 馬島守及兩長老來見, 島主呈筆談,[筆談在下] 蓋是傳命無事, 禮度有節之致賀也. 莊茶一巡而罷.)

〈8〉 島主來傳江戶行查刑官將來之語

信使一行之内	신수(신사) 일횡지니예(일횡지니에)
中官一人之變死之旨達上聞	중관(증광) 일인 변소흔 쫓을 알외오니
嚴重可吟 ³⁴⁾ 味由	엄중이 사회흐라 흐고
被仰出	분부가 나
則	즉시
御目付曲淵勝次郎被差遣候間	어목부 곡연승총랑을(곡연승총랑을) 막저(막혀) (—막저) 보느시니
兼以	미리
安心有之候様	안심흐실 양으로
可相通置與之	알으시게 흐여 두라 흐신 일
御事	이로이다

[平假名轉字] しんしいつこうのうち / ちゅうかんひとりのへんしのむねじょうぶんに
たつし / げんじゅうにぎんみすべきよし / おおせいたされ / すなわち / おめつけ
まがりぶちかつじろうさしつかわされそうろうあいだ / かねもつて / あんしんこれ
ありそうろうよう / あいつうじおくべしとの / おんこと

34) 한 칸 띄운 것은 역시 空格 내지 間字의 방식이 사용된 것이다.

[현대한국어예] 島主가 와서 江戸의 査覈하는 刑官이 올 것을 전한 말: 信使 일 행 내에 / 中官 한 사람이 변고로 죽었다는 소식을 (위에) 아뢰오니, / ‘엄중히 따 져 내어 다스리라.’ 하고, / 분부가 내리어, / 즉시 / 御目付 曲淵勝次郎을 차출하 여 보내시니, / ‘미리 / 안심하시도록 / 통지하여 두라.’ 하신 일 / 입니다.

『해사일기』의 1764년 4월 20일자의 다음 기사가 관련된다.

(13) 좌정한 뒤에 도주가 봉행을 시켜 東武의 回報[번역 등사본이 아래에 나옴.]를 보내오고 또 하인의 맵번역 등사본이 아래에 나옴.]을 적어 首譯으로 하여금 전해 알리게 하였는데, 내용은 대개, “關白이 즉시 엄하게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御目付 曲淵勝次郎이란 자를 따로 정하였다. 이제 급히 내려올 것이며, 罪人 또한 잡혔으니, 우선 기다렸다가 目付가 오면 처결하겠다.……”는 것이다. 나는 ‘江戸에서 조사관을 따로 정한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이기지 못한다.’는 뜻으로 답하였다。(坐定後島主使奉行, 送示東武回報,[翻譯在下] 又書佯語,[翻譯在下] 使首譯傳告, 蓋以關白使即嚴查, 而別定御目付曲淵勝次郎者, 今當馳來, 罪人亦已捕捉, 姑待目付來, 當有處決云云. 余以江戸之別定查官, 不勝感謝之意答之.)

이에 대하여는 일본 京都 相國寺의 승려 竹常(筑常, 大典顯常, 1719~1801)이 기록한 〈傳藏記文〉이 가장 상세한데, 그의 『華遇錄』에 실려 있다고 한다. 이 글은 그 제목이 〈書鈴木傳藏事〉라고 기록되기도 하였는바, 成大中의 『日本錄』과 元重舉의 『乘槎錄』에도全載되어 있다. 成大中은 『日本錄』에서 ‘마침 天宗의 일을 만나 館所의 출입을 매우 엄격히 하였으므로, 틈을 타서 들어와 이야기를 나누었었다. 그러나 감히 거리낌 없이 말하지는 못하고 傳藏의 옥사의 시말을 글로 적어 보내왔는데 文法(글의 문체)이 예스럽고 우아하여 漢代의 문장에 가까웠다’고 하여 竹常이 스스로 적어 준 것으로 적었고(5월 6일자 일기), 元重舉는 『乘槎錄』에서 竹常에게 ‘傳藏의 일을 적은 글이 옛 情趣[古意]가 있으니 다시 한 번을 손으로 쓰고 또 다시 그 法을執行하던 때의 일을 베낀 말들을 이어 적어서 자기에게 달라.’고 하여 받았다고 적고 있다(5월 4일자 일기). 그 글은,

(14) 4월 7일에 盗賊이 조선의 都訓導 崔天淳을 관소에서 살해하였다. 그런데 관소 안에 있던 사람들이 고하여 말하기를, “새벽녘에 어떤 한 사람이 검은 옷을

입고 칼 두 자루를 차고 뛰어서 담을 넘어가는 것을 뒤에서 보았습니다.”라고 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점점 對馬島 사람을 의심하였다. 또한 이미 對馬島의 譯士 鈴木傳藏이 도망갔다는 말을 들었다. 그러나 使行에 관한 일은 일체 대마도에서 담당하고 있고, 對馬侯가 실제로 엄연히 여기에 있으므로 비록 州縣의 관리라 하더라도 조사하여 심문하지 못하였다. 이미 5~6일이 지났는데도 조사를 시작함이 없자 사신들이 장계를 갖추어 원한을 호소하였다. 또한 대마도 쪽에 머무르게 해 두고 떠나보내지 않았다. 이에, 양 長老가 대마도에 헐문하여 그 장계를 얻게 되어, 일이 어쩔 수 없음을 알고 드디어 留守인 安部侯源某에게 사뢰고 곧 급히 江戶에 보고하였다 한다. 또 일이 혼난하게 얹혀 있어 留守는 법대로 하여 미땅히 명령이 내려온 후에 움직이게 되었다. 이에, 源公이 有司에게 말하기를, “이것은 큰일이라서 앉아 오래 지체할 수 없다. 내가 두 監司로 하여금 다스리도록 하겠다. 진실로 우리에게 연루된 것이 있으면 죄에 대한 형벌을 받음이 죽하다.”라고 하였다. 두 감사는 浪華에 있으며서 戶口를 총괄하고 政令을 포고하는 사람을 말한다. 그러면서 한결같이 유수를 받들어 모신다. 이에 두 감사가 유사에게 명을 내려 發捕하여 傳藏의 從父인 茂一과 從兄인 僧某를 잡으니 그를 뒤이어 불잡힌 사람들이 십여 명이었다. 茂一은 실제로 傳藏의 무리로 그 노비가 傳藏을 따라 도망갔다. 僧某는 城의 동쪽 小橋舍에 살면서 傳藏을 여러 날 숨겨 주고 달아나도록 도모하였다. 이에 날마다 죄인을 館所 아래로 끌어내어 두 감사가 직접 와서 갖은 고문을 하며 기다렸으나 傳藏은 아직도 잡히지 않았다. 傳藏의 인상을 그린 것으로 사방으로 일대 수색을 하였다. 浪華에 垣外라고 하는 자들이 있으니 이는 團戶의 무리이다. 化子·唱門·瓦舍·伎戲의 무리와 같이 천하기에 일반 백성과 더불어 나란히 살지 못하는 무리를 관찰한다. 垣外 무리는 市門과 村墟에 나누어 살면서 守衛과 呵禁을 맡는다. 매번 추적해 잡거나 수색해야 할 일이 있으면 반드시 관리의 명을 받으며, 즉시 갈림길의 맥락을 다 통하여 비록 먼 지방이나 먼 구역이라도 곧 이르지 못하는 곳이 없다. 또 공격에도 익숙하여 각자가 한 자 남짓한 金兜을 지니고 있는데, 사람을 치면 즉시 꼬꾸라지지 않음이 없다. 또 木戶라고 부르는 자들이 있어 戲場門[浪華의 戲場門은 道頓港에 있다.] 위에 있다. 출입을 맡아 검열하여 보는 사람이 많으므로 명령받은 직분은 垣外와 같다. 또한 공격에 익숙하며 金兜를 가지고 다닌다. 이에 垣外와 木戶 500명을 출발시켜 사방으로 잡으러 가도록 하고는 명령을 하되, “모든 길에서 의심스러운 사람을 만나면 곧바로 잡아들이라.”고 하고 잘못 잡은 사람은 놓아 주었다. 또 關海門을 설치하여 배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을 살폈다. 매일 두세 사람을 잡았으나 傳藏은 아직도 잡히지 않았다. 18일이 지나자 傳藏은 노비 한명을 따라 小濱을 지나가게 되었다. 小濱은 浪華의 서쪽 60리 거리에 있다. 許偵邏라는 자가 마을에서 傳藏을 보고는 의심하였다. 이에 그를 뒤따라 酒亭에 들어가 주정 주인을 시켜 먼저 시험하게 하였다. 傳藏이 앉아서 술을 시키자 주정 주인이 앞에 가서 대화를 하다가 관에서 傳藏

을 몹시 엄하게 찾는다는 말에 이르자 노비가 얼굴빛이 변하며 손에 들고 있던 잔을 덜덜 떨었다. 주정 주인이 물러나오니 또 귀속말을 하였다. 무리들이 이미 빽빽하게 둘러싸고 드디어 傳藏을 불잡았다. 傳藏은 병이 있다고 아뢰며 小橋舍에서 며칠을 지냈고 또 京師로 도망을 가다가 龜山(龜山은 丹波州에 있다.)에 이르렀는데 關이 있어 뜻대로 되지 않자 거짓으로 有馬溫泉(有馬는 播津州에 속하며 浪華로부터 서북쪽으로 90리 거리이다.)에 놀러 가는 것처럼 꾸며 小濱에 나왔다가 끝내는 잡힌 것이다. 다음날 檻車에 실어 館所로 보내었다. 이 날 江戶의 소식도 또한 도착하여 對馬侯에게 명령하여 말하기를, “事變이 가볍지 않으니 마땅히 엄하게 조사하여 밝히라. 이번에 監察 曲淵勝次郎을 보내어 나아가 감독하여 다스리게 할 것이니 사신들에게 아뢰어 이 뜻을 알도록 하라.”고 하였다. 유수가 곧 對馬侯와 두 장로를 불러 이를 알렸다. 다음날인 20일에 對馬侯와 두 장로가 같이 三使를 뵙고 명을 전하였다고 한다. 두 감사가 傳藏을 고문하고 天涼을 죽인 정상을 모두 알아내고 감옥에 가두었다. 28일에 曲淵勝次郎이 江戶로부터 도착하였다. 두 감사가 罪案을 갖추어 아뢰었다. 이에 公의 으로 犯의 경증을 묻는 獄이 이루어졌다. 曲淵勝次郎이 말하기를, “傳藏이 이미 자백하였으니 빨리 형을 집행하여 감히 조금도 두 나라 사람들에게 累가 됨이 남아 있게 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였다. 5월 2일에 함거에 傳藏을 묶어 길에서 조리돌림을 하고 月正洲로 데리고 나가 침수하였다. 관리로 따른 자가 18인이다 上吏를 與力이라 하고 下吏를 同心이라 한다. 留守部와 兩監部가 있어 부마다 與力 두 명과 同心 네 명을 내보내었다. 三使의 군관 등이 또한 실제로 와서 보았다. 垣外 십여 명이 木吾를 끼고 앞서 달려 나왔고 穢多 여덟 명이 봉등이와 창 등을 들고서 죄인을 끼고 나왔다. 그 형을 집행할 때 포승으로 묶고 칼로 치고 하는 것은 모두 穢多가 한다. 穢多는 백정을 일컫는다. 그들이 사는 곳은 渡邊村이라고 하며 그 사람이 또 천하여 垣外와 같은 무리이다. 나라의 법에 무릇 士 되는 자가 죄를 지으면 그로 하여금 스스로 배를 찌르게 한 뒤에 한 사람이 뒤에서 칼로 그 머리를 베어 떨어뜨린다. 傳藏에게 행하는 형벌 같은 것은 속칭 縛首라 한다. 穢多를 시키는 것은 또한 士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애이다. 茂一과 僧某 등은 아직도 감옥에 있는데, 얼마 안 있어 마땅히 차등있게 법을 집행할 것이다. 天涼의 이름은 원래 ‘宗’字이지만, 譯官이 關白의 祖父名이 吉宗이었기 때문에 ‘宗’을 譯하여 ‘宗’이라고 써서 문서에 나타내었으므로 倭國의 文書에서는 다 ‘天涼’이라고 썼다.(四月七日，賊殺朝鮮都訓導崔天涼于館。而館中人諱曰：“昧爽有一人，黑衣佩二刀，走而踰垣而背見焉。”衆稍稍疑對馬之人。既又聞對馬譯士鈴木傳藏之逋竄也。然以使者事一切係于對馬勾當，而對馬侯儼在斯，故雖州縣官未之按問已。居五六日未有發落，使者具狀訴冤，亦滯在對馬不發。於是兩長老訊問對馬得其狀，以事不可已，遂白留守安部侯源某，即急遁以聞江戶云。且事繫險難，留守法當待令下而後舉之。乃源公則謂有司曰：“此大事，不可坐滯久。吾使兩監司糾治之，苟有坐，吾伏罪足矣。”兩監司者，在浪華總管戶口而布政令者也。

然一奉承留守。於是兩監命有司舉發捕獲。傅藏從父茂一，從兄僧某，連逮者十餘人，俱下獄。茂一實黨傅藏，而其奴從傅藏以逋。僧某者居城東小橋，舍匿傅藏數日，謀使其逸云。於是日牽罪人出館下，兩監臨履，考掠備至。而傅藏尚未獲也。物色大索四方。浪華有垣外云者，乃團戶類也。管轄化子，唱門，瓦舍伎戲之倫，賤不與民戶齒。其屬分處市門村墟，掌守衛呵禁，每有追捕搜求之事，必受命官吏，登時支類脈通，雖僻地遐區，莫不便達。又能習搏擊，各持金吾尺餘，格人莫不立拉。又有木戶云者，在戲場門上浪華戲場在道頓港以掌出入，以其閭看人衆多，故命職與垣外同也。亦皆習搏擊持金吾。於是發垣外，木戶五百人，購求四方。令曰：“凡路逢可疑，輒便執之。誤人者宥。”又設關海口，以察船客。每日執人二三，而傅藏尚未獲也。越十八日，傅藏從一奴過小濱。小濱距浪華西六十里許。偵邏者覩傅藏疑之，乃跡入一酒亭，使亭主先試之。傅藏坐命酒，亭主前語，言及官索傅藏大嚴，奴色變，手杯振戰。亭主退，則又屬耳私語。衆既簇圍，遂捕之。傅藏告疾自免，居小橋數日，又遁之京師。及龜山龜山在丹波，間關不得意，欲僞為有馬溫泉之遊。有馬屬攝津，距浪華西北九十里，路出小濱，而終被捕獲。翌日檻車送之館下。是日江戸報亦至，命對馬侯曰：“事變非輕，當嚴覈之。今遣監察曲淵勝次郎，就以督治。其喻使者，使知斯意。”留守即召對馬侯，兩長老以屬。翌二十日，對馬侯，兩長老俱見三使，以傳命云。兩監掠治傅藏，盡得殺天涼狀，繫獄。二十八日，曲淵勝次郎自江戸至。兩監具告罪案。於是公讞獄成。曲淵曰：“傅藏既首，其速行刑。敢有少留，以累二邦之人。”五月二日，檻縛傅藏，徇罪街上，出月正洲斬之。官吏相率者十八人[上吏稱與力，下吏稱同心。有留守部，兩監部。部出與力二人，同心四人]。三使軍官等亦實臨視。而垣外十餘人，挾木吾先驅。穢多數人，執殳矛之類，夾罪人行。及其就刑，縲之刀之，皆穢多也。穢多者屠者之稱，其居曰渡邊村。其人又賤，垣外之倫矣。國法凡為士者有罪，使自刺腹，而一人從後刀墮其頭。如傅藏刑，俗謂之縛首。其使穢多者，亦不在士例。茂一，僧某等猶在縲絏，尋當行法有差。天涼之名本宗字，而譯官以關白之祖名吉宗，故諱宗為涼，書之路文，倭國文書皆書以天涼。)

로 되어 있다.

〈9〉 島主以天宗事

『彌御平安珍重存候 然者	더욱(더욱) 어평안호옵시니 깃부와이다 그러나
此節不意之變出來	이 쪽 불의지변이(불의지변이) 나오니
御心中察入候	어심중을(어심중을) 슬피오니
於拙者茂	졸즈도(졸자도)
氣之毒存候	미오 금심호오와(근심호오와)
早速公儀江	밧비 나라에

申上候處	알외여습더니
別紙之通被仰出候付相達候』	별지 ^의 로 분부가 낫 ^수 오미 알외 ^는 니다(알외나이) 다)
右之通被仰達御書付相達被成	우대로의라 혼 서부를 건네옵나이다
右相濟而	우를 맛고
『此節	이 대(←재)
科人茂	전인도(죄인도)
相知	아라
則	즉시
被召捕候故	잡바기의(집바기의) (←자 ^자 박기의)
近 : (近)御目付到着候波 : (波)	수이 어목부 오 : 면(오오면)
裁斷相濟	결단을 맛고
無程可知	즈음 업시
御上船候間	상선 ^호 실(상선 ^호 실) 거시니
安心可被成候』	안심 ^호 옵쇼서(안심 ^호 옵소서)

[平假名轉字] いよいよごへいあんちんちょうにぞんじそうろう / しかれば / このせつふいのへんしゅつたい / ごしんちゅうさつしいりそうろう / せつしやにおいても / きのどくにぞんじそうろう / さつそくこうぎへ / もうしあげそうろうところ / べつしのとおりおおせいだされそうろうにつきあいたつしそうろう / みぎのとおりおおせたつせられおかげつけあいたつしなされ / みぎあいすみて / このせつ / とかにんも / あいしり / すなわち / めしとられそうろうゆえ / ちかぢかおめつけとうちやくそらはば / さいだんあいすみ / ほどなくしるべし / ごじょうせんそうろうあいだ / あんしんなさるべくそうろう

[현대한국어역] 島主가 崔天宗의 일로 한 말: “더욱 평안하옵시니 기쁘옵니다. / 그러나 / 이번에 뜻밖의 변고가 일어나니/ (사또의) 심증을 생각하면 / 저도 / 매우 근심이 되어 / 바삐 나라에 알리었더니, 別紙와 같이 분부가 내렸으므로 아뢰나이다.” / 이와 같이 아뢰는 通牒을 전하옵나이다. / 위의 일도 끝냈고, / “이즈음 / 죄인도 / 알아내어 / 즉시 / 잡았기에, / 가까운 날짜 안에 大目付가 도착하면 / 처리를 마치고, / 얼마 안 가서 / 배를 타실 것이니, / 안심하옵소서.”

《해사일기》에는 해당내용이 안 보인다. 그러나 池内(2011: 54~58. 특히 55면의 각주 24)를 살펴볼 때, 對馬藩政史料(《寶曆信使記錄 奉行方八番 每日記 下向京大坂在留中》)에 수록되어 있는 몇 문장들이 〈9〉의 내용과 관련이 있다. 사실상 이 〈9〉는 都首譯 崔鶴齡에게 구두로 전달된 내용 두 가지가

조합된 것이다(『』로 표시된 두 부분). 이는 崔鶴齡의 일본어 실력과도 결부되어 있는 문제라 할 것인바, 정황상·해석상 매우 어려움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 당시에 正使 조엄은 역관들의 일본어 통역에 다소간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해사일기』의 군데군데에 역관들을 꾸중하는 장면이 보인다. 그런데 池內(2011: 57)에서는 당시에 일본측에서도 渡日한 조선 역관 가운데 가장 先任인 都首譯 최학령에게마저 그 일본어 실력에 회의를 품고 구두로 전달하는 동시에 상당 부분을 문서화하거나 심지어 한문으로 작성하여 전달하는 일을 병행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다음 기록이 그것을 잘 보인다.

- (15) 右御口上, 御應對之趣事長々, 上々官言語拙候故, 若申違・申落等有之候而ハ如何ニ付, 真文ニ而為認候由ニ而, 監物より來候付, 左ニ記置, (慶應義塾大學 所蔵 對馬藩政史料, 『宝曆信使記錄 下向大坂ニ而中官崔天宗を通詞鈴木伝藏殺害一件 御供方記錄』)

위 인용문의 ‘上々官’³⁵⁾은 堂上譯官인 首譯들을 가리킨다. 당시의 수역들은 一房首譯인 崔鶴齡(1710~?), 二房首譯인 李命尹(1711~?), 三房首譯인 玄泰翼(1701~?) 등이었는데(『해사일기』의 〈三使一行錄〉 참조), 이곳에서는 특히 都首譯인 최학령을 가리킨다(池內 2011: 57). 16년 전인 1748년에 改修本 『捷解新語』 편찬에 참여한 바 있고, 17년 뒤인 1781년에 重刊本 『捷解新語』 편찬에 참여하게 될, 50대 중반의 都首譯 崔鶴齡의 모습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아마도 이미 오래 전부터(1754년경부터) 최학령과 對馬島人 사이에 있었던 묵은 갈등 때문에 대마도 사람들이 그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을뿐더러 三使나 四文士들마저 역관들을 무시하는 통에 최학령은 都首譯이었다고 하지만 그 처신이 무척 힘들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增訂交隣志』에서 대마도와의 講定案을 만들 때 ‘首譯 崔鶴齡이 사유가 있어 副譯 李命尹을 東萊府로 보내어 差倭와 더불어 講定하도록 하였다.’고 기록한 것이라든가,

35) 일본 측에서는 日供과 관련하여 통신사행의 員役을 上上官·上官·次官·中官·下官의 다섯 등급으로 나누었다.

右議政 洪鳳漢 등이 입시하여 甲戌年(1754) 差倭와의 일을 미리 고하지 않은 譯官 崔鶴齡을 처벌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하면서,

(16) 이번 8월 2일 대신과 비국의 유사당상·稟事堂上이 입시하였을 때에 우의정 洪鳳漢이 아뢰기를, “이는 東萊府使 洪名漢의 장계입니다. 京接慰官이 데리고 온 差備譯官 崔鶴齡의 신병이 위중하여 다른 역관에게 임시 살피게 하였는데 접위관이 일을 마치고 돌아간 후 최학령의 병이 나았습니다. 그러므로 가서 뱃머리에서 작별하게 하였는데 差倭 등이 (최학령이) 일찍이 섬에서 과오가 있었으므로 접견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들으니 갑술년 규례 외에 裁判倭가나왔을 때에 최학령이 別遣譯官으로서 솔선해서 효유하여 마침내 쫓아 보내기 까지 하였는데 여러 왜인들이 이로 하여 (그에 대해) 독기를 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가 사신을 따라 내려 왔으니 비록 마침 病故 때문이기는 하나 스스로 사세가 이상과 같음을 알았다면 미리 發告하여 즉시 效유했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고 차와 배에 오를 때에 비로소 발설해서 일이 미치지 못하게 되었으니 행위가 姑息의어서 보조하는 일이 끝났다고 하여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최학령을 논책하는 방도가 있어야 하므로 묘당에서 품처하기를 청 한다 하였습니다. 최학령이 당초 직무를 수행함은 사실 가능한 일이나 지금에 와서 그 일의 상황을 즉시 밟고하지 않아 구차스럽게 한 것은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본부에서 대략 곤장을 치게 하고, 萊伯은 이러한 작은 일을 번거롭게 장문까지 한 것 역시 매우 미안스럽습니다. 추고하여 賢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추고하지도 말고 치죄하지도 말라. 公務에 관계된 일이므로 지금에 와 생각하니 交隣의 도에 있어 잘못인 듯하다. 신칙이 없어서는 안 되니 萊伯을 추고하라.” 하였다.(今八月初二日，大臣·備局有司堂上·稟事堂上入侍時，右議政洪所啓，此東萊府使洪名漢狀啓也，以爲，京接慰官帶來差備譯官崔鶴齡，身病危重，以他譯權察，而接慰官竣還後，鶴齡病差，故使之行，船頭作別，則差倭等，以曾有見過於島中，姑不可接見云，而聞於甲戌年規外，裁判出來時，鶴齡以別遣譯官，挺身責諭，終至逐送，諸倭因此含毒，而渠既隨奉使而下來，雖緣病故之適會，自量事勢之如右，則所當先機發告，趁即責諭，而不此之爲，差倭乘船之時，始爲發說，事已無及，跡涉姑息，不可以儻事已竣，置之，崔鶴齡，似當有論責之道，請令廟堂稟處矣，崔鶴齡當初舉職，誠爲可尚，而到今不即發告其事狀，以致苟難者，不可無責，使本府略干決棍，萊伯以此小事，至煩狀聞者，亦甚未安，推考賢責何如，上曰，勿推勿治，事係公幹，到今思之，其在交隣之道，似涉非矣，不可無飭，萊伯推考。) [《비변사등록》，영조 37년(1761) 8월 6일]

라고 한 것이라든가, 조엄이 《해사일기》 1764년 5월 6일자 일기의 기사에서,

(17) 交隣할 즈음에 국경을 나간 사신의 의사 표현이 오로지 역관의 혀에 의지하므로 당초 역관을 설치할 때 지극히 긴요하다고 여겼는데, 변괴가 있는 지금에는 더욱 역관의 선택이 중요하다고 믿어졌다. 수역 崔鶴齡·李命尹은 비록 옛 명역관처럼 사려가 많고 왜어를 잘하지는 못하였지만 그 사람됨이 모두 단단하였다. 일찍이 내가 동래 부사로 있을 적에 최학령은 지난 일 때문에 나에게 허물을 입었었는데, 수행원의 차출이 있자 나는 그의 허물을 모두 씻어 주고 임용하였으며, 이명윤은 스스로 나에게 은혜를 입었다고 여기는 자였다. [중략] 최학령은 首都譯이기 때문에 관계한 일이 우수하였으며 그의 아우 凤齡은 자못 부지런한데다가 이번 일에 공로가 많으니 둘에게 다 논공행상이 있어야 마땅하겠지만, 마침 옥사의 마감을 기다리는 중이니 어찌 그 공로를 논하랴?(交隣之際, 出疆之行, 居間辭意, 專憑譯舌, 當初設置, 至爲緊關, 到今事變之後, 尤信其不可不擇也。首譯崔鶴齡李命尹, 雖不如古昔名譯之多識慮善僂語, 蓋其爲人則俱頗緊束矣。曾按萊府時, 鶴齡則以已往事見過於余, 及差是行, 余果蕩滌而任之, 命尹則自以謂受恩於余者也。[중략] 鶴齡以其都首譯之故, 所關爲優, 且其弟鳳齡, 頗爲勤幹, 且多效勞於今番事, 並宜有論償之典, 而余方待勘, 何可論人之功勞乎。)

라 한 것이라든가 하는 기록들이 이와 관련이 있다.

영조 37년(1761) 2월 초7일에 써어진 다음 편지³⁶⁾도 최학령의 12세 연하였던 아우 崔鳳齡이 ‘尊公’이라 불릴 만한 대마도 사람³⁷⁾에게 보낸 것인바, 최학령과 대마도 사람들 사이의 갈등과 관련된 這間의 사정을 짐작하게 해준다.

(18) 이전의 흔 적도 뵈온 적은 업소오나 客館의 尊公 候平安호 읍신 줄은 종 : 듯습고 자내오며 家兄의 편지를 보오니 信使적의 裁判之職으로 가 거서 家兄을 각별 情저이 구읍시다 乎오니 感激乎 읍기를 어이 다 덕스오며 쪘흔 家兄이 僕의게 고별호오되 近來 館中에 是非 이서 애들리 자내니 이 寛痛乎 수연을 尊公 前의 술고 만일 프러 주시면 恩惠야 이를 배 업고 이 일이 풀나이면 信使에도 당흘 거시매 信使時 아모 어려운 일을 당흘여도 극진히 宣力흘 거시요 其外 賣買事나 凡公幹事에 어려운 일이 잇스와도 極力 周旋흘 거시니 이 수연을 尊公 前의 極盡히 술고 施行호야 주시게 乎라 乎여스오니 尊公거

36) 이 편지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 준 국민대학교의 김주필 교수에게 감사드린다.

37) 草梁의 왜관에 나와 있었던 ‘館首’직이나 ‘裁判’직을 가진 대마도 사람일 터인데,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는지 아직 파악하지 못하였다.

오서 舊情<을>³⁸⁾ 저부리지 아니호 읍시고 家兄의 일을 끄리 주시면 至於僕호
야도 兩國 公幹事나 賣買事나 흐야도 극진히 宣力호을 거시니 아모조로나彌
縫호야 주읍시를 千萬 專恃호느이다 잠상

辛巳 二月 初七日 來儀 崔判官[印] (對馬宗家文書番號 995-33)

‘來儀’는 최봉령의 字이다. 그는 이 계미·갑신사행에 上通事로 참여하고 있어 최학령·봉령 형제가 다 같은 사행에 참여한 특이한 사례를 보이게 되었다. 이 두 형제는 이 통신사행이 끝난 후 불과 몇 개월 만에 논공행상의 대상이 된다. 『비변사등록』 영조 41년(1765) 2월 12일자 기사에 ‘知訓導 崔鶴齡은 加資하여 역관에 오래 올라 있게 하고 崔鳳齡 등은 本衙門에 高品付錄하라는 傳教’가 내리게 된다.

(19) 이번 2월 3일 試射에 親臨하였을 때에 전교하기를, “接慰官이 올라왔다. 知訓導 崔鶴齡이 特差의 뜻을 이해하고 주선을 잘 하여 국가의 기강을 수립하였으니 가상한 일이다. 한 사람을 포장하여 백 사람의 사기를 드높여야 하겠다. 加資하여 知中樞府事에 먼저 차출하고, 이어 길이 譯官에 불이되 崔鳳齡·崔弘景·玄商楨을 본 아문에서 높은 품계의 뉴봉에 불이도록 하라.” 하였다.(今二月初三日親臨試射時, 傳曰, 接慰官旣已上來, 而知訓導崔鶴齡, 能體特差之意, 善爲周旋以樹國綱, 其涉可嘉, 其宜獎一躉百, 加資知中樞先差後仍爲永付譯官, 崔鳳齡·崔弘景·玄商楨, 令本衙門高品付錄。)

앞으로 1764년 4월 20일자 기록이 조선과 일본 양측 자료에서 어떻게 처리되어 있는지 위 〈9〉와 관련하여 좀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만 여기에 지적해 두는 것으로 만족하기로 한다.

III. 나가기

통신사행록에 소로분[候文]과 그 조선어번역문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사

38) ‘〈을〉’은 이 편지가 다 써어진 이후에 대격조사가 ‘舊情’ 옆에 추가되었음을 표시한 것이다.

실은 매우 특이한 사례라고 할 만하다. 『捷解新語』 권10이 候文으로 구성되어 있음은 잘 알려져 있으나,³⁹⁾ 이는 역관들이나 역관지망생들의 일본관련 실무문서 및 書翰文의 독해·작성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였었다. 역관들 외의 사행구성원들은 候文을 전혀 읽을 수 없었다. 『해행종재』를 재편찬한 조엄의 입장에서는 가장 완벽한 통신사행록의 典範을 보이고 후대의 통신사행들을 위한 ‘膳錄冊’의 역할을 하게 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해사일기』를 〈日記〉(卷1~3)와 〈酬唱錄〉·〈書契公私禮單〉·〈回書公私禮單〉·〈物種公派錄〉(卷4) 및 〈往復文字〉·〈狀啓〉·〈筵話〉·〈祭文〉·〈禁制條〉·〈日供〉·〈一行錄〉·〈路程記〉·〈軍令〉·〈船上旗幟擺列圖〉·〈船上官兵列立圖〉(권5)⁴⁰⁾로 꾸렸던 것이다. 그러므로 권5의 〈往復文字〉 속에 使行時에 받았던 候文들을 번역문과 함께 실었던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고 할 것이다.

39) 原刊本 권10에는 候文만 들어 있으나, 改修本과 重刊本의 권10에는 조선어번역문도 함께 들어 있다. 그런데 原刊本의 한자로 적은 候文에는 흥미롭게도 ‘然者 御使者之儀’는 當月十一日 府中出船之由 此中之便에 申來候間’(19)에서처럼 ‘-를’(21b), ‘-의’(21b, 24b), ‘-로’(5a), ‘-으로서’(23a), ‘-에’(4b, 5b, 10b, 12a, 12b, 15a, 19a, 19b, 20a2, 24a, 26b2, 30a, 31a), ‘-예’(15b, 16a, 17a, 18a, 24a, 24b2), ‘-에도’(8b, 9b), ‘-브터’(31b); ‘-은’(4a, 19b, 20b, 21b, 22a, 23b, 27b, 30a, 32b), ‘-는’(19a, 26a, 29b, 30b), ‘-란’(6a), ‘-도’(13a, 16b, 20a2, 21a, 22a, 24a, 24b, 30a, 31a, 32b) 등의 조선어 助詞가 군데군데 들어가 있음을 볼 수 있다. 한편, ‘船은 無事히 着舡仕 先以 目出度存候’(21)의 ‘無事히’는 유일하게 조사가 아닌 접미사 ‘-히’가 통합한 예를 보인다. 앞으로 이에 대한 치밀한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0) 項目名은 筆寫本 『海槎日記』 卷頭의 〈海行攜載目錄〉에 의한다. 〈海槎日記目錄〉이 아님이 특이하다.

참고문헌

- 姜信沆(2000), 『朝鮮의譯學』, 서울대학교출판부.
- 姜周鎮(1974), 〈海行攬載 解題〉, 『국역 해행총재』 1, 민족문화추진회.
- 구지현(2005), 『癸未隨槎錄』에 대한 재검토: 작가와 사행록으로서의 의미를 중심으로, 『동방학지』 131, 261~288.
- 구지현(2006), 〈癸未(1763) 通信使 使行文學 研究〉,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경숙 역(2006), 『조선후기』 지식인, 일본과 만나다, 소명출판. [元重舉, 『乘槎錄』]
- 金東柱(1974), 〈『海槎日記』 해제〉, 민족문화추진회 편(1975), 『海槎日記』, 『국역 해행총재』 7, 고전국역총서 95.
- 김보경 역(2006), 『붓끝으로 부사산 바람을 가르다』, 소명출판. [南玉, 『日觀記』]
- 김성진(2011), 〈癸未使行團의 大阪滯留記錄과 大典禪師 竹常〉, 『동아시아문화 연구』 49, 149~183.
- 민덕기(2004), 〈최천종 살해사건으로 본 19세기 중반 通信使의 대마도 인식〉, 『한일관계사연구』 21, 75~110.
- 민족문화추진회편(1975), 『海槎日記』, 『국역 해행총재』 7, 고전국역총서 95.
- 박재금(2006), 〈와신상담의 마음으로 일본을 기록하다〉, 소명출판. [元重舉, 『和國志』]
- 朴眞完(2006), 〈朝鮮資料と日本資料の口訣研究: 兩足院所藏以酌庵資料を中心に〉, KUNTEN TO KUNTEN-SIRYO 116, 101~124.
- 박희병(2013), 〈조선의 일본학 성립: 원중거와 이덕무〉, 『한국문화』 61, 179~219.
- 辛基秀·仲尾宏 責任編輯(1994), 『大系朝鮮通信使: 善隣と友好の記録』, 第七卷 (甲申·寶歷度), 明石書店.
- 신로사(2011), 〈1811년 辛未通信使行과 朝日 문화 교류: 筆談·唱酬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安代洙(2013), 〈崔天宗 殺害事件을 소재로 한 實錄體 小說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연규동·이전경·김은희·김남시(2012),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난 ‘文字’의 의미〉,

- 《東方學志》 158, 143~182.
- 이규수 역(2002), 강재언 저, 『조선통신사의 일본견문록』, 한길사.
- 이영경(2013), 〈영조대의 교화서 간행과 한글 사용의 양상〉, 『한국문화』 61, 249~278.
- 李元植(1991), 『朝鮮通信使』, 民音社.
- 李元植(1994), 〈寶歷度・筆談唱和および遺墨關係資料〉, 辛基秀·仲尾宏 責任編輯, 『大系朝鮮通信使: 善隣と友好の記録』, 第七卷(甲申·寶歷度), 明石書店, 116~119.
- 李元植(1997), 『朝鮮通信使の研究』, 思文閣出版.
- 李賢熙(2012), 〈단어 ‘한글’ 및 ‘문자’와 음운론적인 정보〉, 『2012년 훈민정음 학회 국내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훈민정음과 오늘』, 사단법인 훈민정음학회.
- 李賢熙(2013), 〈현대 이전의 ‘翻譯’과 ‘諺解’에 대한 몇 고찰〉, 『한국어문학과 번역』, 서울대학교 한국어문학연구소 제2회 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집, 1~12.
- 이혜순(1996), 『조선통신사의 문학』, 이화여대 출판부.
- 林昌奎(2009a), 『『捷解新語 卷十』의 文面解讀: 冒頭 부분을 中心으로』, 『日本語學研究』 25, 195~211.
- 林昌奎(2009b), 『『捷解新語』 卷十의 文面解讀(II)』, 『日本文化學報』 42, 5~23.
- 林昌奎(2011), 『『捷解新語』 卷十의 文面解讀(III)』, 『日本文化學報』 50, 61~76.
- 林熒澤(1994), 〈癸未通信使와 실학자들의 일본관〉, 『창작과비평』 85, 319~339.
- 鄭 光(2002), 『역학서연구』, 제이엔씨.
- 정 민(2007), 『18세기 조선 지식인의 발견: 조선 후기 지식 패러다임의 변화와 문화 변동』, 휴먼인문.
- 정승혜(2003), 『조선후기 왜학서 연구』, 태학사.
- 정연탁 역(1975), 〈자들과 주고 받은 글(與彼人往復文字)〉, 민족문화추진회 편 (1975), 『海槎日記』, 『국역 해행총재』 7, 고전국역총서 95.
- 최강현(2000), 『한국기행가사연구』, 신성출판사.
- 崔惠珠(2005), 〈한말 일제하 샤큐오(釋尾旭邦)의 내한활동과 조선 인식〉, 『한국 민족운동사연구』 45, 5~51.
- 崔惠珠(2009), 〈한말 일제하 재조일본인의 조선고서 간행사업〉, 『大東文化研

- 究》 66, 417~448.
- 河宇鳳(1986), 〈새로 발견된 日本使行錄들: 『海行摠載』의 보충과 관련하여〉, 《歷史學報》 112, 75~104.
- 河宇鳳(1991), 〈『通信使臘錄』의 史料的 性格〉, 《韓國文化》 12, 511~533.
- 홍학희 역(2006), 《부사산 비파호를 날 듯이 건너》, 소명출판. [成大中, 《日本錄》]
- 池内敏(1999), 《唐人殺しの世界: 近世民衆の朝鮮認識》, 臨川書店.
- 池内敏(2011), 〈癸未信使の通譯たち・ノ-ト〉, 《동아시아문화연구》 49, 45~63.
- 小倉進平(1940), 《增訂朝鮮語學史》, 刀江書院.
- 長正統(1978), 〈倭學譯官書簡よりみた易地行聘交渉〉, 《史淵》 115, 九州大學 文學部, 95~131.
- 岸田文隆(2009), 〈語學書と歴史記録: 早稻田大學服部文庫所藏「朝鮮語譯」と對馬宗家文書との照合〉, 《朝鮮半島のことばと社會: 油谷幸利先生還暦記念論文集》, 明石書店, 236~268.
- 金文京(2010), 《漢文と東アジア: 訓讀の文化圏》, 岩波新書 1262.
- 高橋昌彦(2010), 〈朝鮮通信使唱和集目錄稿〉, 松原孝俊 編, 《グローバル時代の朝鮮通信使研究: 海峽あれど國境なし》, 花書院, 211~291.
- 仲尾宏(1994), 〈寶歷度通信使とその時代〉, 辛基秀·仲尾宏 責任編輯, 《大系朝鮮通信使: 善隣と友好の記録》, 第七卷(甲申·寶歷度), 明石書店, 94~105.
- 三宅英利(1986), 《近世日朝關係史の研究》, 文獻出版.
- LEE, Hyeyon-hie & Soo Yeon LEE(2012), “A Different Interpretation of the Preface to Hunmin jeongeum by King Sejong,” The Interactions of Writing Systems (Proceedings of the SCRIPTA 2012), The Hunmin jeongeum Society, 225~237.